

월간 재정포럼

권두칼럼

공공기관과 책임있는 자율성
윤대범

현안분석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박정흠

정책토론티포트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재무부, OECD 필라2의 미국 기업 면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 외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정포럼 바로가기

월간 재정포럼



월간 재정포럼

2026년 03월 20일 발행

통권 제35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조혜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제작	길민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원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KIPF

CONTENTS

권두칼럼

04

공공기관과 책임있는 자율성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현안분석

10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박정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토론포트

38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50

미국-재무부, OECD 필라2의 미국 기업 면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주요국의 재정동향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권두칼럼



공공기관과 책임있는 자율성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yun@knou.ac.kr

공공기관과 책임있는 자율성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 342? 525?

정부는 2026년 1월, 342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전력이나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2025년과 비교할 때 11개 기관이 증가했는데, 이미 설립되었지만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공공기관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사실 1월의 정부 발표에서 더 눈에 띈 것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미지정된 사실상의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183개 기관 명단의 공개이다.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운영법」상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기관들이 드러난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상 지정된 공공기관 342개와 이번 공개된 미지정 기관 183개를 합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 의미의 공공기관은 525개이다. 오랫동안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실질적인 공공기관 숫자를 처음 공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 공공성과 효율성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언제나 높다. 공공기관의 경우 2006년부터 알리오(ALIO)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경영정보들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있다. 그동안 알리오는 342개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번에 추가 공개된 183개 기관의 경영정보도 알리오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기대한다. 투명성의 확보는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 존재의 근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 제시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지속가능성도 강조하였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을 압축하면 공공성과 효율성(혹은 기업성)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다고 인식된다. 공공성은 주로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효율성은 기업성과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개념상 좁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를 넓은 시각에서 보면 공공성과 효율성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공사를 불문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추구하는 ESG 경영이나 사회책임 경영,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은 모두 공공성과 효율성의 공존을 전제로 한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

물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선행조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책임성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은 소유주, 즉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가를 향한 것이다. 이 책임성은 공공기관 설립의 목적 혹은 정당화의 근거로서, 소유주의 기대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가 강조한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은 바로 이 책임성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은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 청렴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속성을 지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경영평가, 청렴도 평가, 공시제도, 그리고 각종 지침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타율적인 것들로서, 공공기관들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대응할 뿐이다. 형식적 대응에 그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책임성에 대한 형식적 대응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여전히 낮고, 아직도 감춰진 것들이 많으며, 비윤리적 행위들도

반복해서 발생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계속 제한하고, 공공기관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의욕 상실에 빠진다. 언제부터인가 정부와 공공기관 간에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다.

정부로부터의
간섭과 규제가
불필요하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율성과 책임성의 공존 강조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그렇다면 제대로 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렵겠지만 그 출발은 공공기관에 대한 충분한 자율성의 부여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자발성이 책임성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충분한 자율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자율성에 비례하는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대로 성과관리를 하고, 민간기업 이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의 결과가 공공기관의 책임성 실현이며,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의 간섭과 규제가 불필요하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율성과 책임성의 공존 필요성은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목적)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책임있는 자율성’ 필요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의 배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있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자율성은 그 자체로써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공공기관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국민 및 정부 정책과
연계된 '책임있는
자율성'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된다. 정부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고, 정부를 대신해 일을 한다. 정부 예산도 직접 투입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분리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국민 및 정부 정책과 연계된 '책임있는 자율성'이다. 물론 각자의 고유한 영역과 장점이 있다.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정책 혹은 정책적 방향의 설정에 있다면, 공공기관의 이니셔티브는 현장과 실행에 있다. 이 두 가지가 씨줄과 날줄처럼 균형적으로 결합될 때 공공기관은 국가성장 and 국민의 삶을 효과적으로 견인하는 든든한 동아줄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이 들 때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와 제3조를 살펴보자. 

현안분석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chpark@kipf.re.kr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장기간 이어져 온 초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세에 돌입하였으며 그 속도는 앞으로 수십년간 가속화될 전망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사회에 전방위적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부동산 수요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도 포함된다. 인구 감소로 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그에 맞추어 주택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주택 공급은 감가상각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그 속도는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세대 간 중첩 일반균형 모형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속되기 어려우며, 2035년에는 주택가격이 하락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Lee and Suh, 2025). 이와 같은 주택가격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건설경기 침체, 가계부채 위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업 투자 증가 등 긍정적 효과 또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의 또 다른 영향은 주택 임대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은 전세와 월세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전세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세입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일종의 사적 금융인데, 우리나라처럼 발전된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이와 같은 대안 금융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사례로 여겨진다.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데에는 한국주택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정책 지원의 역할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주택 소유자가 당장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월세나 주택판매가 아닌 전세 공급을 선택할 때에는 주택 보유에 따라 기대되는 미래의 매매차익이 당장의 기회비용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 주택

전세제도의
점진적 쇠퇴가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주거정책 또한
구조적 전환을
피할 수 없다.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공급 또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의 월세화’는 이미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규모로 발생한 소위 ‘전세사기’ 사태 이후 대안 금융제도로써 전세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 임대계약 중 전세계약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전세시장이 빠르게 위축되었으며, 이후에도 전세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전세계약 비중이 4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드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계기가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전세제도가 제도적 전환기에 돌입하였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¹⁾

전세제도의 점진적 쇠퇴가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주거정책 또한 구조적 전환을 피할 수 없다. 주거정책은 크게 주택 공급과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자 지원 정책에는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금융 정책과 취약계층 대상 주거급여, 주택개량 지원 등이 있다. 정책 유형별 예산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용자와 이차보전 지원에 13.8조원, 주거급여 중 주거급여에 2.7조원, 주택개량 지원에 0.3조원이 투입되었으며,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에 따르면 용자지원 8.5조원 중 5.7조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되었다(하세정·박정흠, 2024). 즉, 전체 주택 수요자 지원 예산 중 주거금융 비중이 절대적이며 주거금융 내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이 곧 전세제도 지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세 거래의 양상이 곧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는 주택 임대시장의 중장기적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주거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구 변화와 주택가격, 전세거래 간의 관계를 시군구 단위 실거래 자료로 분석하여, 예정된 인구 감소가 임대시장에 미칠 인과적 영향을 추정한다. 계량분석 방법으로는 변화가 잦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기대를 형성하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시적 충격에 따른 노이즈를 완화하고 중장기적 구조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장기차분 기법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 시군구 단위의 인구증감이 매매가격 및 전세거래량의 변화와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1) 『한국경제』, 「시론」월세 시대, 새 안전장치 필요하다, 2025. 11. 24., <https://v.daum.net/v/20251124000946703>, 검색일자: 2026. 2. 11.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전세거래 추이와 정부의 주거정책 개요, 선행연구 등 연구배경을 소개한다. 제III장에서는 인구 감소가 주택가격 및 전세 거래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IV장 결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와 함께 인구 감소에 대응한 주거정책 설계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최근의 전세거래
위축 움직임을
총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세거래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다.

II 연구배경

1. 전세거래 추이

본 절에서는 최근의 전세거래 위축 움직임을 총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임대거래 중 전세거래의 비중을 뜻하는 전세거래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다. 분석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구득한 아파트,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는 전국 모든 매매와 임대거래를 수록한 자료이므로 주택시장 거래 추이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행정자료이지만 전월세 거래의 시계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료상의 한계로 인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매매와 달리 전월세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화가 2021년 6월에야 이루어져, 의무화 이전 거래량 자료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물론 신고 의무화 이전에도 임대거래를 신고할 유인은 존재하였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확보를 위하여 계약 체결 이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거래를 신고할 유인이 매우 높았으며, 월세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거래를 신고할 유인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전세와 월세의 신고율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하므로 전월세 거래의 시계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의무화 이전 전세와 월세 신고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전세거래비율에 편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확보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보다 훨씬 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2021년 이전 전세거래비율이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은 2011~2025년 연도별 전세와 월세거래량 및 전세거래 비율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1년부터 월세거래량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신고의무화에 따른 월세 거래 신고율이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월세거래 상승세는 2021년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므로 다소간의 편이를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전세거래 하락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따라 전세거래비율은 2020년 이전 60%대에서 2022년 50%, 2025년 40%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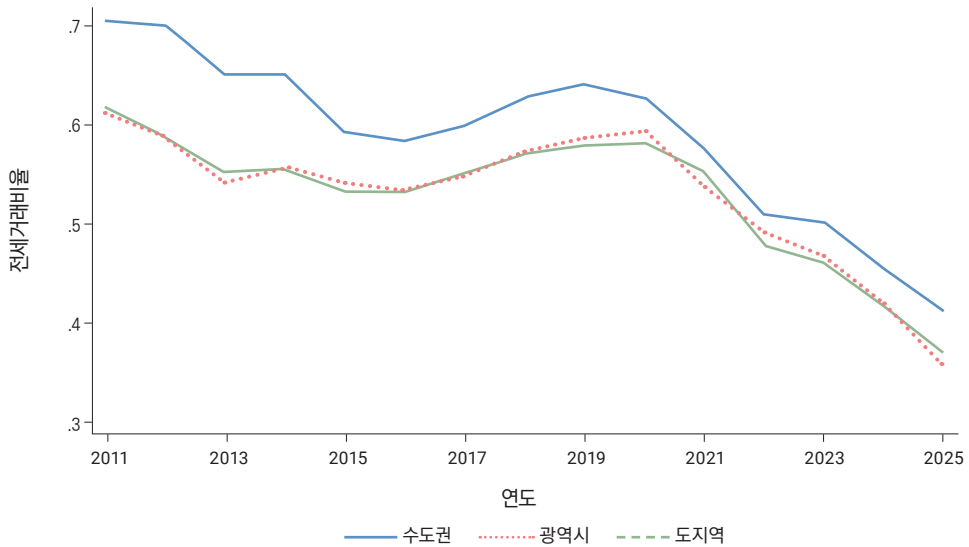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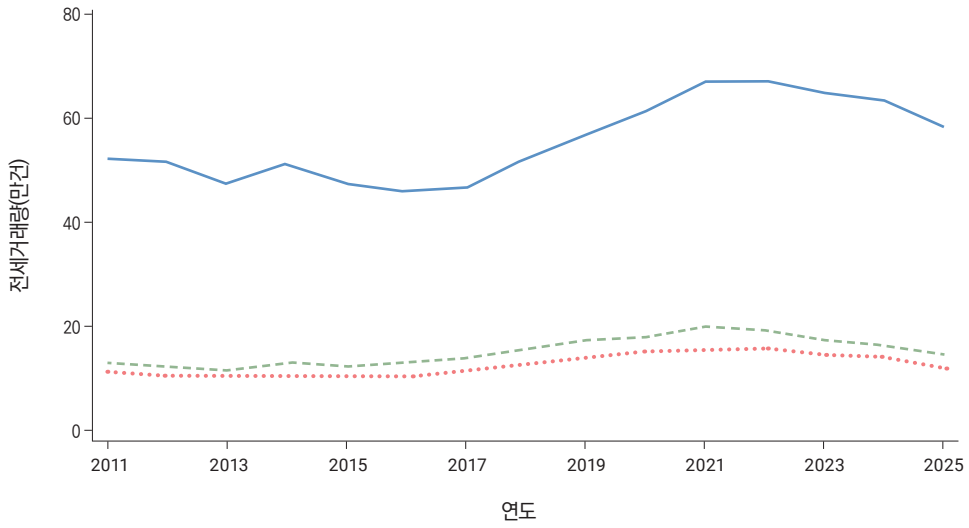
그림 1 주택 임대거래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건별 자료제공」, <https://rt.molit.go.kr/pt/xls/xls.do?&mobileAt=>, 검색일자: 2026. 2. 10.에서 내려받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 각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그림 2]는 수도권과 광역시, 도지역의 전월세 거래 추이를 보여준다. 수도권의 전세거래량이 비수도권의 전세거래량을 크게 웃돌았으며 전세거래비율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전세거래비율 하락 양상은 권역에 무관하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전세거래 감소 현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의 전세거래비율은 2022년 50%에서 2025년 4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해당 기간 수도권에 비하여 약 5% 낮은 수준에서 평행한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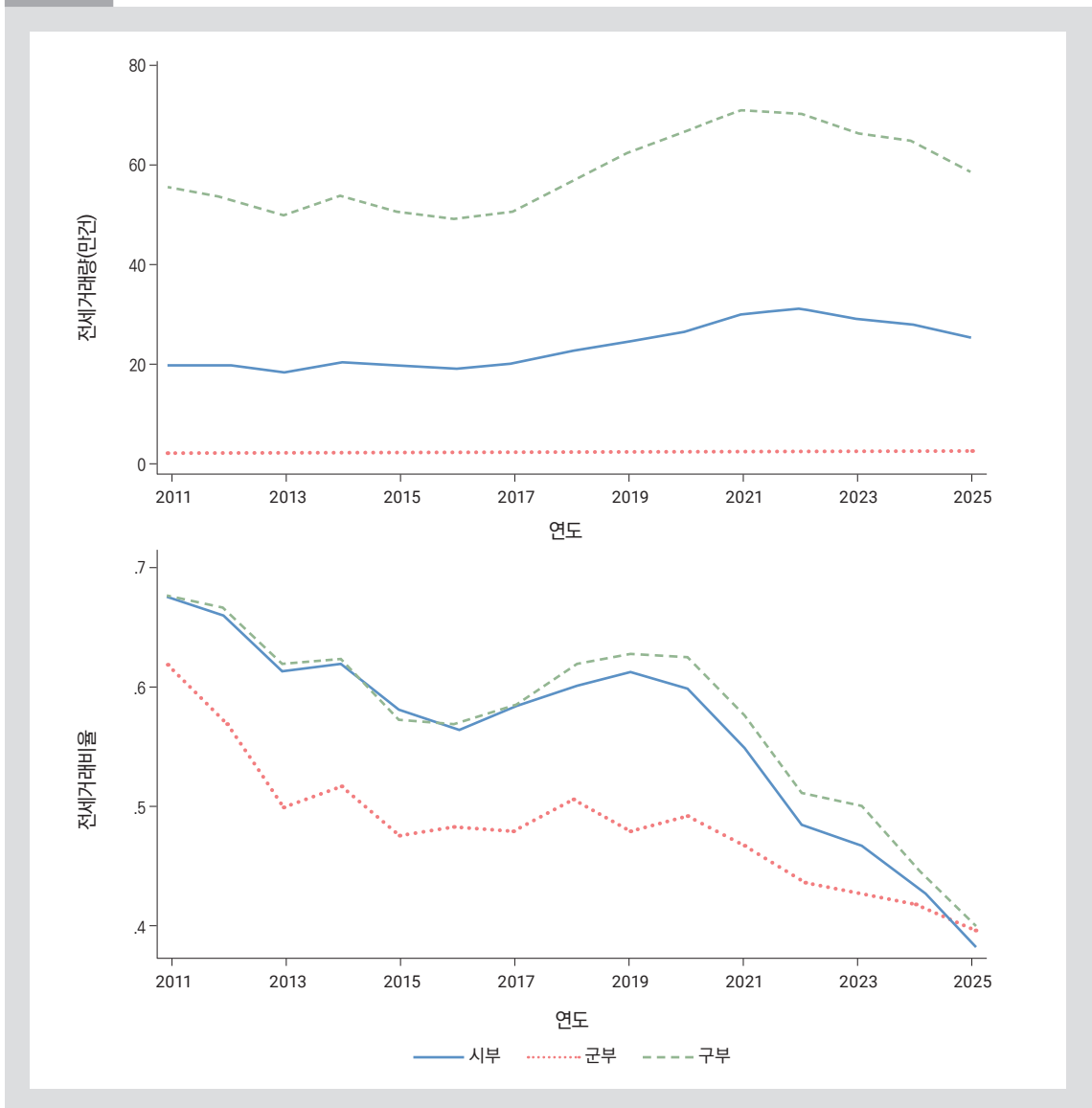
그림 2 주택 임대거래 추이, 권역별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건별 자료제공」, <https://rt.molit.go.kr/pt/xls/xls.do?&mobileAt=>, 검색일자: 2026. 2. 10.에서 내려받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 각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도시화 수준에 따른 임대거래 추이를 보기 위하여 [그림 3]에서는 시부, 군부, 구부 등 행정구역 유형별 전월세 거래 추이를 살펴본다. 거래 총량과 비율 모두 도시화 정도에 따라 구부, 시부, 군부 순서로 전세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도시 지역의 전세거래비율이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2025년에는 행정구역 유형별 전세거래비율이 모두 40% 수준으로 유사하게 수렴하였다는 점이다. 오히려 도시의 전세거래 하락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 것은 통상적 인식과 상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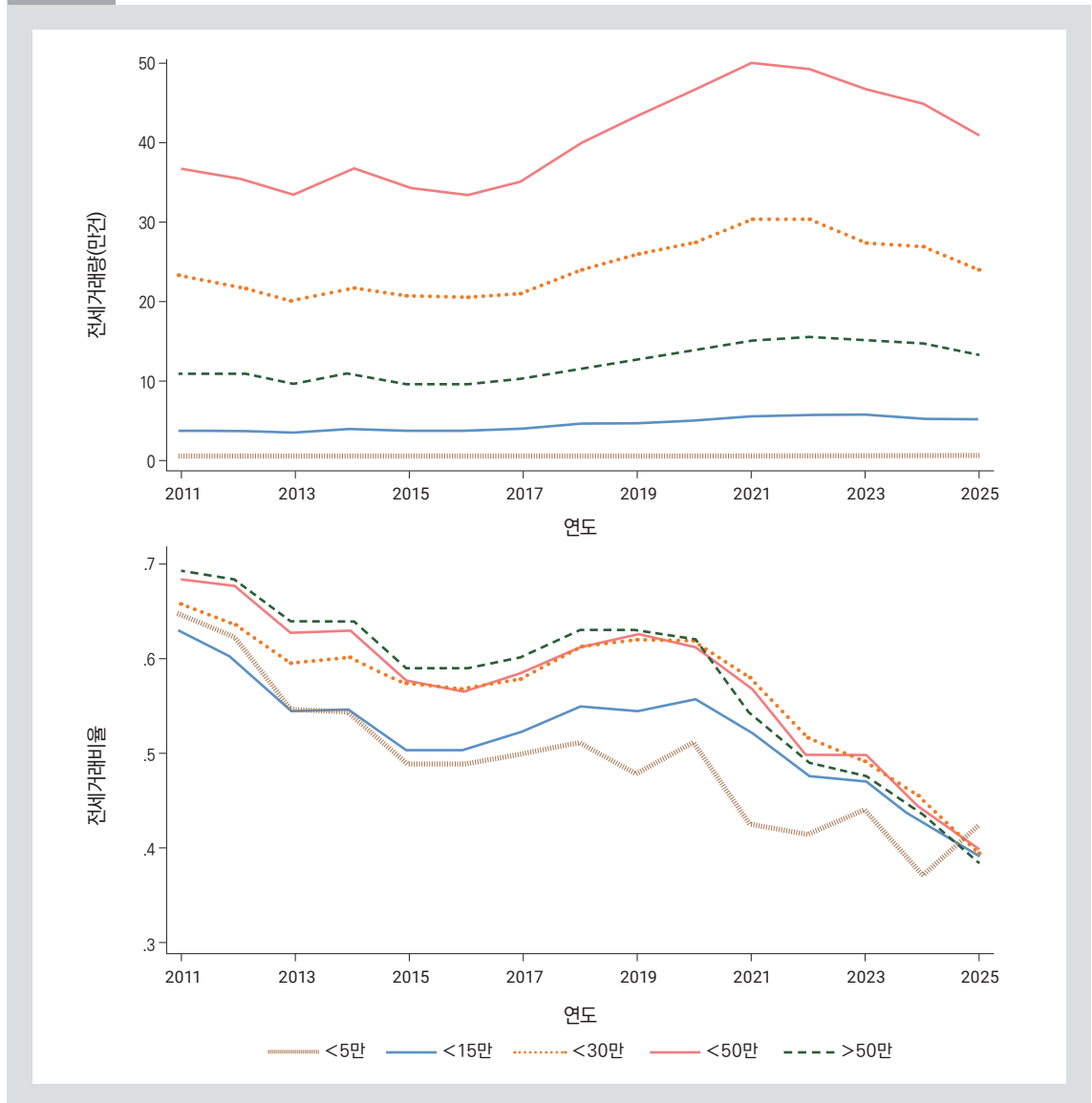
그림 3 주택 임대거래 추이, 행정구역(시부·군부·구부)별



출처 국공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건별 자료제공」, <https://rt.molit.go.kr/pt/xls/xls.do?&mobileAt=>, 검색일자: 2026. 2. 10.에서 내려받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 각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그림 4]에서는 2023년 해당 시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월세 거래 추이를 살펴본다. 앞서 도시화 정도에 따른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도시의 전세거래비율과 인구수 15만 미만 소도시 지역의 전세거래비율이 최근 몇 년간 40% 수준에서 서로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주택 임대거래 추이, 인구규모별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건별 자료제공」, <https://rt.molit.go.kr/pt/xls/xls.do?mobileAt=>, 검색일자: 2026. 2. 10.에서 내려받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 각년도 자료 및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6. 2. 1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 주택 임대거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의 전세거래 위축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수도권 여부, 인구수 및 도시화 정도에 관계 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히 전세거래비율 감소 속도가 완화되는 양상도 관측되지 않았다. 전세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 주거정책 개요²⁾

주거 관련 정책은 크게 주거 관련 비용지원 정책과 공급 정책, 세제혜택 및 공공 부문 보증으로 구분된다.

비용지원 정책에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소유 희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용자 및 이차보전, 전세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용자 및 이차보전, 월세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대출 등이 있으며 공급정책에는 크게 분양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공급 관련 정책이 있다.

표 1 주거정책 유형 분류

유형	정책 대상		정책 내용
주거 관련 비용지원	자가 관련	주택소유	• 주택 유지보수 지원
		주택구입	• 주택구입자금 용자 제공 및 이차 보전
	임차	• 임대료 지원 • 임대보증금에 대한 용자 및 이차 보전	
주택 공급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건설에 대한 출자 및 용자 사업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대한 출자 및 용자	
세제지원	주택구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임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공공부문 보증	주택구입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보증(금융기관 대상)	
	전세	•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보증(금융기관 대상) •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임차인 대상)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주택매입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보증(금융기관 대상) •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분양주택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환급 및 분양이행(완공) 보증(수분양자 대상) • 주택건설자금 PF(Project Financing) 보증(금융기관 대상)	

출처: 하세정 박정흠(2024), p. 5, <표 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본 절은 하세정 박정흠(2024)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세제혜택의 경우 주택구입비용 및 임차보증금 관련 소득공제와 월세 관련 세액공제 등이 존재한다. 이 중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구입 관련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청약통장 저축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로 이루어져 있다. 월세 관련 세액공제는 근로자 대상 월세 세액공제와 사업자 대상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로 나뉜다.

주거정책 유형별 2022~2024년 재정투입 규모를 살펴보면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은 2.4조~3.1조원 수준, 주택개량 지원은 0.3조~0.5조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 부문에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용자가 9.5조~12.5조원, 이차보전이 0.4조~1.4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분양의 경우 2022년 20.5조원에서 2024년 17.1조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관련 지출은 2022년 0.5조원 수준에서 2024년 0.9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전체 재정지출 합계는 2022년 33.8조원에서 2024년 35.1조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조세지출의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2022년 14조 5,925억원)와 월세 세액공제(3,319억원)는 단순한 규모 비교가 어려우나, 계산을 단순화하여 평균 한계세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실질 지원 규모는 약 2조 9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나 월세 세액공제의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유형별 재정투입 규모를 살펴본 결과, 주거 관련 비용지원은 임차료 직접 지원보다는 전세자금·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에 집중되고 있어, 현행 주거비용 지원체계가 월세 중심 임차가구보다는 전세 및 자가구입 금융지원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금융 사업의 경우 전세와 매매 관련 투입 총량을 분리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22년 주택도시시기금 운영실적에 따르면 용자지원 8.5조원 중 5.7조원이 전세자금대출에 활용되어 전세 지원 비중이 매매보다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거 관련
비용지원은 임차료
직접 지원보다는
전세자금·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표 2 주거 관련 재정 및 조세지출 규모(2022~2024년)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임차료·주택개선	주거비 지원	24,066	28,960	31,090
	주택개량 지원	5,400	3,046	2,963
금융 지원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95,300	103,800	123,645
	이자보전 지원	3,850	7,656	13,951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관련	4,806	4,771	8,581
주거공급	공공임대 분양(출자·용자 등)	204,577	164,071	170,742
합계		337,999	312,304	350,972
세제지원	주택자금 소득공제	145,925	-	-
	월세 세액공제	3,319	-	-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77	-	-

출처: 하세정 박정흠(2024), p. 23, (표 24)

구체적으로 전세자금 용자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대상 계층과 상황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매우 촘촘한 체계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비정상거처 거주자,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사기 피해자, 기존 대출 이용자의 갱신만료 임차인 등 생애주기와 특수 유형별로 개별 상품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소득·자산 요건과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대출 한도 역시 일반 버팀목(수도권 1.2억원)에서 신혼부부(수도권 3억원), 신생아 특례(최대 3억원), 전세피해자 대환(최대 4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있어, 전세 수요 계층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금리 수준 또한 시중 전세대출 금리 대비 현저히 낮은 정책금리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연 1.5%,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연 1.1%까지 적용되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의 경우 일정 한도 내 0% 금리도 제공된다. 일반 버팀목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역시 연 2% 내외의 구간에서 지원되고 있어, 정책금융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 이러한 구조는 전세자금 조달을 금융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전세시장 유지·안정에 대한 정책적 개입 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와 관련된 공공부문 보증은 크게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구분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차주의 신용도를 보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금리 인하

표 3 전세자금 융자 관련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내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연 1.5%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2.0~3.1%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1~3.0%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연 1.2~2.7%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 대출대환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대출금리	연 1.2~2.7%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대출금리	연 1.2~3.0%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7~3.1%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3~3.3%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 8. 1~'21. 7. 31 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대출금리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대출한도	수도권 4.5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내

출처: 하세정·박정흠(2024), p. 10, (표 1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고의 분석
결과와 같이 향후
전세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주거정책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와 대출 접근성 제고를 지원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전세대출 상품과 결합 운용되어 정책금융과 보증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전세자금 조달을 금융시장 메커니즘 내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택 구입자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방식에 비해 전세제도를 활용하여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구조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중 하나가 전세자금대출 보증제도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위험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위험이 확대되면서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 완화, 특례보증 도입, 피해자 대상 추가 보증상품 등이 확대되어 왔다. 이와 같은 보증 체계는 전세시장 내 신용위험을 공공부문이 일정 부분 흡수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전세거래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 주거정책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주거 관련 비용지원 및 금융 사업, 공공 부문 보증은 전세 관련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외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결과와 같이 향후 전세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주거정책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주택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금리 등 금융시장 요인과 정책 개입에 따른 영향 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인구변동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한 거시 일반균형 모형과 미시 패널 분석 방법론을 망라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ankiw and Weil(1989)은 연령구조 변화를 활용하여 주택 수요의 장기 경로를 예측하며,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주택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Lindh and Malmberg(2008) 역시 스웨덴 자료를 통해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률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반면 Lisack et al.(2021)는 중첩세대 모형을 통해 기대수명 증가와 저축 동기의 강화가 주택을 자산축적 수단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상반된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Gong and Yao(2022)는 일반균

형 모형을 통해 인구요인이 미국의 장기 주택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인구 감소와 주택시장의 관계를 분석한 Lee and Suh(2025)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동공급 감소가 주택가격, 금리, 자산, 부채 등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대 간 중첩 일반균형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인구 감소 초기에는 기존의 자산축적 구조와 저금리 환경에 의하여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 감소, 주택 수요 기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발생하며, 한국의 경우 2035년부터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구 변화가 주택가격의 장기 추세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임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지만, 분석 대상은 주로 매매가격 또는 총주택 수요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대시장, 특히 전세시장과의 구조적 연계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인구 변화의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 분석은 선행연구의 거시적 분석을 지역 간 미시적 분석으로 보완하며, 인구 변화의 전세거래에 대한 영향 분석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임대시장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제시한다.

인구 변화와 주택가격 간 관계를 지역 단위 미시 분석으로 연구한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Glaeser and Gyourko(2005)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1970~1990년대 미국 도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증가와 감소가 주택가격에 비대칭적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주택은 비교적 빠르게 건설될 수 있으나 소멸은 매우 느리다는 점에서, 도시 성장기에는 인구 증가에 비해 가격 상승이 제한적인 반면 도시 쇠퇴기에는 인구 감소보다 주택가격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Feng et al.(2018)은 2010~2017년 미국 대도시권(MSA)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증가와 감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인지 재검증하여, 경기회복기에도 인구 감소 시 주택가격 하락 폭이 인구 증가 시 가격 상승 폭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인구 감소의 주택가격 영향이 인구 증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택 소멸의 속도, 즉 노후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일 수 있다.

전세와 월세로 이루어진 국내 임대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은 주로 전세 혹은 월세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였다(남궁수빈·김경완, 2017; 이다영·이상경, 2019 등). 특히 송인호(2017)는 고령화와 1인가구, 저소득가구 증가를 월세 수요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제시하였는데, 인구요인에 따른 임대시장 영향을 분석한다

국내 임대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은 주로 전세 혹은 월세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저출산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로 인한 전세 공급 감소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주거수요 감소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해당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월세 수요 증가에 집중하는 반면 본 연구는 저출산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로 인한 전세 공급 감소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혜린(2014)의 경우 가격 변화와 전세거래량 변화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점이 있으나 해당 연구는 전세가격 변화에 집중하는 반면 본 연구는 매매가격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Ⅲ 인구 감소와 주택가격 변동이 전세시장에 미친 영향

1. 분석방법론

본 장에서는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변화가 주택 매매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주택 매매가격 변화가 전세거래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론적으로 전세 공급은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주택 소유자는 최대한 많은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며, 월세 수익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수익보다는 월세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인구 감소에 따른 주거수요 감소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지역 간 인구 및 주택가격 변동의 차이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인구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택가격 및 임대공급 등의 부동산 거래 행태는 금리 및 정책 변동에 따른 단기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단기 교란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실증분석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관측된 인구 및 주택가격 변화 추이에 따른 반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5년 장기차분(long difference) 방법론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전세거래량과 매매가격, 인구 등 주요 변수에 대해 5년 누적 증가율을 산출하고, 비중첩 표본을 구성하여 추정에 활용한다. 인구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과 인구 및 주택가격 변화가 전세거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의 구체적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Delta^5 \text{로그주택가격}_{it} = \beta_1 \Delta^5 \text{로그인구수}_{it-4} + \beta_2 \Delta^4 \text{로그주택수}_{it-1} + \lambda_t + \mu_j + \varepsilon_{it} \quad \text{식 (1)}$$

$$\begin{aligned} \Delta^5 \text{로그전세거래량}_{it} = & \beta_1 \Delta^5 \text{로그주택가격}_{it-4} + \beta_2 \Delta^5 \text{로그인구수}_{it-4} \\ & + \beta_3 \Delta^4 \text{로그주택수}_{it-1} + \lambda_t + \mu_j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 (2)}$$

이때 $t = 2020, 2025$ 이며 Δ^5 는 5년 장기차분을, Δ^4 는 4년 장기차분을 의미한다.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혹은 연면적 1m^2 당 매매금액 차분의 4년 선행값을 활용하였고 인구수 역시 차분의 4년 선행값을 활용하여 분석기간 내에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기적 겹침을 최소화하였다. 통제변수인 주택 수의 경우 2025년 자료가 부재하여 4년 장기차분값의 1년 선행값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차분기간의 시작점을 맞추었다. λ_t 는 연도 고정효과를, μ_j 는 행정구역 유형(시부·군부·구부) 고정효과를 뜻한다. 표준 오차는 시군구 단위에서 군집하여 이분산성과 시군구 내 시계열 상관성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장기차분 모형을 활용할 경우 단기 경기변동, 일시적 정책충격 등 고빈도 변동성을 완화하고 변수 간 중장기적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인구수 변화로부터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추론을 도출하여 이를 주택 거래에 반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 및 2011~2025년이라는 분석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과 2025년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의 5년 차분값을 분석하며, 주택가격 및 인구수 변화가 전세거래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설명변수의 4년 선행값을 사용한다. 선행값을 사용하면 향후 4~9년간의 전세거래 변화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매매가격 및 인구 변화에 역으로 미치는 영향은 주택시장 변동성을 생각할 때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역인과관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2015~2020년과 2020~2025년 두 차분 기간 각각의 평균적인 주택가격 및 전세거래량 변화를 통제한다. 이를 통하여 거시경제적 요인, 금리 및 전국 단위 정책 변화 등 모든 지역에 공통적인 영향을 주는 연도별 요인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다. 또한 행정구역 유형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도시화 정도에 따라 분석 기간에 상이하게 나타난 주택거래 행태 변화를 통제한다. 추가로 분석기간 지역별 주택 수 변화를 포함하여 대규모 주택 공급이 전세거래와 과거 주택가격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 고정효과를 추가하거나 전세거래비율을 종속변수로 활용, 5년이 아닌 4년 차분값을 활용하는 등의 추가 분석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장기차분모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장기차분 모형을 활용할 경우 단기 경기변동, 일시적 정책충격 등 고빈도 변동성을 완화하고 변수 간 중장기적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주요 설명변수인
인구 변화의 경우
정주 단위인
가구 수가 아닌
인구수를
활용하였다.

내생성 우려는 존재한다. 지역경제 충격,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인구와 주택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유 요인들의 누락에 따른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지역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개발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4~9년 전의 주택가격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역내 전세거래량에 영향을 줄 정도의 대규모 지역경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는 주택 공급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택 공급량 변화를 통제함으로써 관련 우려를 최소화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는 2011~2025년 국토교통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와 KOSIS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시군구 단위에서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앞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2021년 이전 기간에 대해 신고 정확도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석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별 연도별 고효과를 통제하고 지역 간 변이를 활용하는 분석방법론의 특성상 각 시군구 및 각 시점의 구조적 신고 누락에 따른 편이는 모두 통제하기 때문에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각 시군구의 시점별 신고 누락 행태 변화가 크다면 이로 인한 영향³⁾은 통제할 수 없지만 가설적인 시군구별 연도별 신고 행태 이질성에 따른 손실보다 장기차분 방법론 적용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주된 종속변수인 전세거래량 차분의 경우 보증금 보호 유인으로 인하여 신고 누락에 대한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점과 2021년 전후 거래량의 분절적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전세와 월세 거래는 원자료의 분류체계에 따라 월 임대료의 존재 여부로 구분한다. 그에 따라 통상적으로 반전세라 불리는 높은 보증금과 낮은 월 임대료로 이루어진 계약 또한 월세로 구분되어, 전세 감소가 반전세 증가로 이루어지는 보다 세부적인 역학 관계를 분석에서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하지만 전세가 반전세로 전환되는 현상도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 부합한다는 점과 반전세의 정의에 자의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월세 세부 유형에 따른 분석은 추후 연구를 위하여 남겨둔다.

주요 설명변수인 인구 변화의 경우 정주 단위인 가구 수가 아닌 인구수를 활용하였다. 가구 수로 주거 수요를 측정할 경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한 주거 수요를 포착할 수 없어 오히려 정확한 주거 수요 규모를 알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인구수 변화에 따른 가구 분화 행태가 급격히 달라지지 않는

3) 예를 들어 월세 계약 중 단기 임대인 경우 신고 누락 비율이 높을 수 있는데, 지역별 경제 상황에 따라 단기 임대 비율 변동 폭이 크다면 연도별 지역별 신고 누락 행태에도 변화가 클 수 있어, 본고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동을 모두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인구수로 주거 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기초통계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5년 전세 성장률의 평균은 0.03으로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나 표준편차가 0.53으로 비교적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선행 매매가격 5년 성장률의 평균은 0.22로 높은 상승 경향을 보였으며, 최소 -0.30, 최대 0.93으로 지역 간 격차도 상당하다. 가격 하락 구간(감소분)의 평균은 -0.01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최소 -0.30까지 나타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가격 조정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인구 5년 성장률의 평균은 -0.01로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소폭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감소분 평균은 -0.04로 인구 축소 지역이 일정 비중 존재함을 시사한다. 행정구역 유형별 분포를 보면 구부 41%, 군부 33%, 시부 26%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전체 표본은 489개로, 2020~2025 차분 구간 247개 시군구와 2015~2020 차분 구간 242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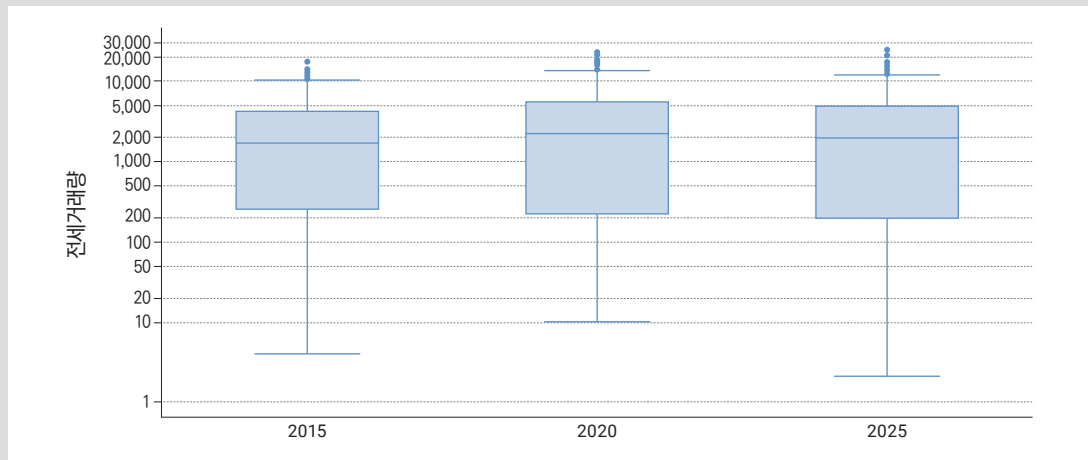
표 4 기초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Δ^5 로그전세거래량	0.03	0.53	-1.66	2.30
$L4.\Delta^5$ 로그주택가격	0.22	0.19	-0.30	0.93
$L4.\Delta^5$ 로그주택가격(감소분)	-0.01	0.03	-0.30	0.00
$L4.\Delta^5$ 로그인구수	-0.01	0.09	-0.51	0.52
$L4.\Delta^5$ 로그인구수(감소분)	-0.04	0.05	-0.51	0.00
구부	0.41	0.49	0	1
군부	0.33	0.47	0	1
시부	0.26	0.44	0	1
표본크기	489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건별 자료제공」, <https://rt.molit.go.kr/>, 검색일자: 2026. 2. 10.에서 내려받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 각년도 자료 및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6. 2. 1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연도별 시군구별 전세거래량 분포는 [그림 5]에 제시한다. 그림의 y축은 전세거래량을 로그 척도로 표현하여 상대적으로 전세거래량이 적은 시군구의 거래량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에 따르면 시군구별 전세거래량은 연간 10건 미만부터 30,000건 수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전세거래량이 극도로 적은 시군구의 경우 각 연도 한두 건의 거래량 변화에 따라 전세거래 변화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실증분석에서는 분석 결과의 강건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50건 미만의 전세거래량을 기록한 시군구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5 연도별 시군구별 전세거래량 분포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건별 자료제공」, <https://rt.molit.go.kr/pt/xls/xls.do?&mobileAt=>, 검색일자: 2026. 2. 10.에서 내려받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전세 실거래 2015, 2020, 2025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식 (1)에 따라 추정된 결과를 <표 5>에 제시한다. 종속변수는 5년 주택가격 성장률(로그 차분)이며, 주요 설명변수는 4년 선행된 인구 5년 성장률(로그 차분)이다. (1)열의 기본모형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주택가격 상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결과와 일치한다. 회귀계수 0.249는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가격이 5년간 약 0.25%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변화가 지역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쳐 가격 변동 압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2)열에서는 행정구역 유형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인구 변화 효과의 이질성을 검토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구부)에서는 인구 증가의 가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도시 규모가 보다 작은 시부와 군부에서는 인구 변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주택시장의 경우 인구 변화로 인한 수요변동 요인 외에도 공급 및 투자요인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수요변동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3)열에서는 인구변동의 효과가 인구증감 여부에 따라 바뀌는지 살펴본 결과, 인구 증가 시 주택가격 변화에 비하여 인구 감소 시 주택가격 변화의 폭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공급의 특성으로 인하여 도시 쇠퇴기 주택가격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5 시군구별 인구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구분	종속변수: $L4.2^{\circ}$ 로그주택가격		
	(1)	(2)	(3)
$L4.2^{\circ}$ 로그인구수	0.249** (0.098)		
$L4.2^{\circ}$ 로그인구수×구부		0.132 (0.147)	
$L4.2^{\circ}$ 로그인구수×군부		0.261* (0.155)	
$L4.2^{\circ}$ 로그인구수×시부		0.438*** (0.118)	
$L4.2^{\circ}$ 로그인구수(증가분)			0.216 (0.151)
$L4.2^{\circ}$ 로그인구수(감소분)			0.301* (0.181)
$L4.2^{\circ}$ 로그주택 수	0.079 (0.112)	0.035 (0.112)	0.086 (0.117)
표본크기	489	489	489
연도×행정구역 고정효과	○	○	○

-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p<0.1, ** p<0.05, *** p<0.01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건별 자료제공」, <https://rt.molit.go.kr/>, 검색일자: 2026. 2. 10.에서 내려받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 각년도 자료 및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6. 2. 1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시군구 단위에서 주택가격 및 인구 변화가 전세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식 (2)에 따라 추정된 결과를 <표 6>에 제시한다. (1)열의 기본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증가분에 대한 회귀계수가 0.512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5년간 1% 증가할 경우 5년간 전세거래가 약 0.51%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인구 변화가 전세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변화로 인한 수요변화가 대부분 주택 수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4년간 주택 수가 1% 변화할 때 전세거래량은 약 1.47%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택가격이 전세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 공급자(주택 소유자) 입장의 유인 변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주택 수가 주택가격 외의 경로로 전세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전세수요 창출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경로 모두 인구 변화가 주택매매 및 임대시장 수요를 통해 전세거래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지역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2)~(4)열에서는 지역 유형 및 주택가격 감소 여부를 포함한 확장모형을 제시한다. (2)열의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전세거래량 조정은 행정구역 유형에 무관하게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도시(구부)의 경우 주택가격이 전세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중규모 도시(시부)와 소규모 도시(군부) 순으로 영향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구 감소에 따른 전세거래량 감소는 도시화 정도가 작은 지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규모 도시와 농촌 지역의 경우 전세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전세거래량 변화 정도를 정교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3)열에서는 연간 전세거래량이 50건 이하인 시군구를 배제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군부에 가장 많이 분포하므로 군부에서 주택가격 변화가 전세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가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 앞선 (2)열의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군부에서 주택가격이 5년간 1% 증가할 경우 전세거래량이 약 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세거래 비활성 지역을 제외한 결과 그 효과가 약 1.3%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세거래 비활성 지역의 경우 오히려 거래량이 애초에 적다 보니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거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활성 지역의 경우 전세거래가 주택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로 흥미로운 결과는 (2)열의 분석과 비교할 때 (3)열의 분석에서 인구 변화가 전세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유의성이 사라진 것이다. 주택가격이 전세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유인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인구 변화가 전세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임차인의 직접적인 주거 수요에 따른 반응이다. 따라서 본 결과는 전세거래가 활발한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면 전세거래가 적은 지역의 경우 한두 명의 추가적인 수요 발생 여부가 전세거래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가격의 증가와 감소가 전세거래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은 (4)열에 제시한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 증가가 전세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가격 감소의 영향에 비하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시 전세 공급 증가 유인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만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공급 위축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특히 주택가격 감소의 전세거래 영향에 대한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1.282로 크게 나타나 지역 간 이질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지역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표 6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화가 전세거래량에 미친 영향

구분	종속변수: Δ^5 로그전세거래량			
	(1)	(2)	(3)	(4)
$L4.\Delta^5$ 로그주택가격	0.512*** (0.115)			
$L4.\Delta^5$ 로그주택가격 \times 구부		0.310*** (0.098)	0.308*** (0.099)	
$L4.\Delta^5$ 로그주택가격 \times 군부		0.934** (0.367)	1.264** (0.556)	
$L4.\Delta^5$ 로그주택가격 \times 시부		0.501** (0.198)	0.545*** (0.192)	
$L4.\Delta^5$ 로그주택가격(증가분)				0.533*** (0.124)
$L4.\Delta^5$ 로그주택가격(감소분)				0.273 (1.282)
$L4.\Delta^5$ 로그인구수	-0.095 (0.230)	-0.108 (0.221)	0.273 (0.197)	-0.087 (0.214)
$L4.\Delta^5$ 로그주택 수	1.467*** (0.343)	1.499*** (0.340)	1.203*** (0.317)	1.473*** (0.353)
표본크기	489	489	430	489
연도 \times 행정구역 고정효과	○	○	○	○

-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p<0.1, ** p<0.05, *** p<0.01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건별 자료제공」, <https://rt.molit.go.kr/>, 검색일자: 2026. 2. 10.에서 내려받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 각년도 자료 및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6. 2. 1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택가격 및 인구 변화가 전세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건성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한다. (1)열과 (2)열에서는 종속변수를 로그전세거래량이 아닌 전세거래비율의 차분값으로 설정하였다. (1)열의 기본모형 분석 결과 5년간 주택가격 1% 증가는 전세거래비율 6.8% 상승으로 이어졌다. 반면 인구 변화와 주택 공급 변화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변동에 따른 임대 수요 변화분이 전세와 월세에 고르게 배분되었음을 시사한다. (2)열의 행정구역 유형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전세거래비율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은 중간크기 도시인 시부에서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유의한 추정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전세거래 증가율 분석에서 소도시(군부)에서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과 대비되는데, 소도시의 경우 전세거래비율이 애초에 낮기 때문에 인구 감소 시 더 낮아질 여지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3)열에서는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세거래량을 종속변수로 하지만 시도 고정효과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시도 고정효과가 없을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5)열의 분석은 5년이 아닌 4년 차분을 기준으로 2025년과 2021년 시점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인구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수, 주택가격 변화가 전세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4년 차분의 경우에도 강건하게 추정되었다. 이상 강건성 분석 결과 연구의 주된 결론이 대체로 강건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표 7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화가 전세거래량에 미친 영향: 강건성

구분	Δ^5 전세거래비율		Δ^5 로그전세거래량	Δ^4 로그주택가격	Δ^4 로그전세거래량
	(1)	(2)	(3)	(4)	(5)
$L4.\Delta^5$ 로그주택가격	0.068** (0.029)		0.411*** (0.121)		
$L4.\Delta^5$ 로그주택가격×구부		0.041 (0.027)			
$L4.\Delta^5$ 로그주택가격×군부		0.063 (0.091)			
$L4.\Delta^5$ 로그주택가격×시부		0.108** (0.052)			
$L4.\Delta^5$ 로그인구수	-0.012 (0.063)	-0.020 (0.062)	-0.091 (0.207)		
$L.\Delta^4$ 로그주택 수	-0.065 (0.070)	-0.066 (0.069)	1.656*** (0.394)		
$L.\Delta^4$ 로그주택가격					0.330*** (0.114)
$L.\Delta^4$ 로그인구수				0.290*** (0.108)	-0.142 (0.161)
$L.\Delta^4$ 로그주택 수	1.467*** (0.343)	1.499*** (0.340)	1.203*** (0.317)	0.095 (0.108)	1.919*** (0.304)
표본크기	489	489	489	492	492
연도×행정구역 고정효과	○	○	○	○	○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p<0.1, ** p<0.05, *** p<0.01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건별 자료제공」, <https://rt.molit.go.kr/>, 검색일자: 2026. 2. 10.에서 내려받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래 각년도 자료 및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6. 2. 1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IV 결론

본 연구는 시군구 단위 주택 실거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변화가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주택가격 및 인구 변화가 전세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차분 방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가격은 5년간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변화가 지역 주택 수요를 통해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가격이 5년간 1% 상승할 경우 전세거래는 5년간 약 0.5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매매가격 변동이 전세공급 유인을 변화시키는 경로가 실증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행정구역 유형에 따라 다소 이질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도시 및 군부 지역에서 가격 및 인구 변화에 대한 전세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감소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시장 구조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될 경우 전세공급 유인이 감소하여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가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시장 축소는 곧 정책 효과성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점진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소도시 및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관리와 공공부문 보증의 위험관리 체계를 병행하여, 가격 하락과 임대시장 위축이 지역경제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주거지원 정책을 월세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재정 부담과 임대료 상승 등 추가 쟁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월세 지원이 임대료 보조 등 현금성 이전지출의 형태를 가진다면 대출 및 보증 등 금융지원 구조가 중심이 되는 전세 지원 정책에 비하여 직접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료 직접 지원의 확대를 고려하는 경우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월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확대는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비 보조 정책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정책지원의 효과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일부 이전됨을 뜻한다. 따라서 임대료 지원을 고려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효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임대시장에 대한 지원은 임대료 보조의 대폭 확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세제도의 구조적 전환은 가계의 자산 형성과 부채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전세는 청년·신혼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비용으로 주거를 확보하여 추후 자가 구입 등을 위한 자산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가격상승 기대의 약화로 전세제도가 축소될 경우 이러한

인구 감소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시장 구조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세제도의 축소를
단순한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주거·금융 구조로
전환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로는 더 이상 보편적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이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방식, 가계부채 구성, 주택금융 구조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라는 사적 금융제도를 활용한 자산축적 경로를 전제로 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주택금융 구조 재편은 임차인을 거치는 주택금융 자금 순환 구조를 금융기관 대출 중심으로 재편하여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임대시장 재편이 금융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제도의 축소는 임차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월세는 전세에 비하여 높은 주거비와 낮은 주거 안정성을 지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존재해 왔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는 생애주기별로 합리적인 주거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청년·초기 가구 형성 단계에서는 이동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 월세 중심의 거주가 일반화되고, 소득과 자산이 축적되는 중·후기 단계에서 매대로 전환하는 경로가 하나의 표준적 생애주기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정책 역시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며, 이후 자가 전환이 과도한 부채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보증·세제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때 주거 안정의 개념 또한 주거비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등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한 정주 여건의 문제로 확장시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은 전세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를 점진적으로 재조정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주거, 생활 및 자산 형성 경로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세제도의 축소 가능성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주거·금융 구조로 전환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가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주거·금융 구조의 대규모 전환 과정에서 지나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남궁수빈·김경완, 「구조적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전세 거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제22권 제2호, 2017, pp. 129~152.

송인호, 『주택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정책개선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6.

이다영·이상경, 「전월세 유형별 거래량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연구』, 제29권 제4호, 2019, pp. 43~54.

전혜린,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동적관계 분석: 서울 25개 자치구별 실거래가를 활용」,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 pp. 1~28.

하세정·박정흠,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별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안정 관련 조세재정정책 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2024.

〈해외 문헌〉

Feng, Y., Kim, T., and Lee, D. C., "Housing Price and Population Changes: Growing vs Shrinking Cities," *Accounting and Finance Research*, 7(4), 2018, pp. 59~65.

Glaeser, E. L., and Gyourko, J., "Urban decline and durable hous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3(2), 2005, pp. 345~375.

Gong, Y., and Yao, W., "Demographic changes and th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95, 2022.

Lee, J., and Suh, H., "Long-run effects of super low fertility on housing markets," *Economic Modelling*, 150, 2025.

Lindh, T., and Malmberg, B., "Demography and housing demand? what can we learn from residential construction dat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1(3), 2008, pp. 521~539.

Lisack, N., Sajedi, R., and Thwaites, G., "Population aging and the macro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17(2), 2021, pp. 43~80.

Mankiw, N. G., and Weil, D. N.,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2), 1989, pp. 235~258.

참고문헌

〈웹사이트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건별 자료제공」, <https://rt.molit.go.kr/pt/xls/xls.do?&mobileAt=>, 검색일자: 2026.

2. 10.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MT_ZTITLE%26list_id%3DA_7%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B04006%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101%26, 검색일자: 2026. 2. 10.

정책토론포트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행사 개요

- ▶ 행사명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 ▶ 주제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
- ▶ 일시 2026. 3. 3.(화) 15:00~16:30
- ▶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 209호
- ▶ 주최 재정경제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프로그램

15:00~15:15 개회식

개회사 이 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축사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15:15~15:50 발제

발표 1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과 발전 방향: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권성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발표 2 **글로벌 경쟁 속 성장전략의 변천과 발전 방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이경근 | 법무법인 태평양 상임고문

15:50~16:30 토론

좌장 이전오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위원장

토론 백제흠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안종석 |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최승재 |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광욱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정책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6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60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조세정책 60년과 미래 발전 방향: 형평과 성장의 동행’이라는 대주제 아래,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변천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책토론포럼>에서는 심포지엄의 발표 및 토론 내용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발제

발표 1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과
발전 방향: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권성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1934년 근대적 개인소득세 도입 이후, 국가 경제의 성장 단계에 맞춰 그 기능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왔다.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성장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 과세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이는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금융실명

제 실시는 지하경제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며 소득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분기점이 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고소득자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확대하고,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제는 실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세부담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24년 기준 32.5%로 과거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71.7%를 부담하고 있다. 중간소득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 차이가 크지 않아 재분배 기능이 저해되고 있으며, 세원 투명성 차이를 반영하여 각종 공제제도가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사업소득자와의 실효세율 격차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소득세 정책은 과표 현실화 등 세원 투명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종합적인 정책 설계를 지향해야 한다. 사업소득의 투명성이 제고된 만큼 근로소득자에게 집중된 공제제도를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생계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공제 중심의 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 내 개별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정부보조금 등 유관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의 적정 순부담 구조를 달성하고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표 2

글로벌 경쟁 속 성장전략의 변천과 발전 방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이경근 | 법무법인 태평양 상임고문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는 1960년대 도입기부터 현재까지 대외 경제 여건과 국제 규범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며 진화해왔다. 초기에는 경제 자립을 위해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에 원칙적으로 조세지원을 제공했으며,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7년 EU가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감면제도를 '유해 우대조세제도'로 지정함에 따라, 2019년부터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직접 감면을 폐지하고 현금지원(Cash Grant) 중심의 체제로 구조적인 전환을 단행하여 운용 중이다.

지난 60년간의 조세감면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외자 유입을 촉진하고 고도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경제 안정화와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조세감면이 인프라나 규제 환경 등 비조세 요인에 비해 투자 유인 효과가 부차적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FDI 비율은 장기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양적 유치 위주의 정책이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질적 성과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조세감면 정책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이라는 국제조세 규범의 대전환기를 맞아, 지원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 등에 맞춰 재설계가 필요하다.

토론

토론 1

백제흠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속에서, 개인 단위 과세에 국한된 현행 소득세제가 가구 구성에 따른 세부담 완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첫 번째 발표자의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부부 단위 과세나 가구 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부부합산신고과세(Married Filing Jointly)처럼 결혼한 부부가 과세 단위를 선택함으로써 혼인 이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가족계수제(Quotient Familial)처럼, 과세대상 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등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 정부에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가족친화적 세제지원 확대 방향과 합치한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세제 구조 개편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과세 단위의 급격한 변화는 세수입 확보라는 소득세 본연의 기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기존 부양가족 공제체계 강화와 가구 단위 과세 도입 중 어느 쪽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소득세 구조는 고소득자에게만 누진적 구조인 문제가 있다는 발표자의 지적에 공감한다.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전체 세액의 71%가량을 부담하는 가운데 고소득자가 체감하는 실질 조세 부담은 사회보험료 등의 준조세 부담을 포함하는 경우 더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료 부담 비중의 10년 증가율(2012~2022년)이 39.5%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소득자에 집중된 근로소득세 부담과 높아지는 준조세 부담은 고소득자 및 우수인재의 해외 이주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춘 합리적인 소득세 구조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를 통한 투자유인 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5년 OECD는 외국자본 자국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과도한 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를 조사하여 폐지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포럼 등으로 대응하였지만, 여전히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가 부각되면서 BEPS 프로젝트를 진행되었고 글로벌최저한세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또한 트럼프 정부 이후에 당초 취지가 다소 퇴색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26년 1월 5일 발표된 OECD 글로벌최저한세 개편안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은 실질지출에 연동된 조세인센티브는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하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현행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국가 간 조세감면 경쟁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 중 글로벌 최저한세 산정 시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함으로써 세액의 감소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적격세제인센티브(Qualified Tax Incentives, 이하 QTI)는 해당 국가에서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인센티브로서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도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내생산촉진세제’ 법안이 10개 이상 제출되어 있다.

반면에,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에 크게 활용되는 현금지원(Cash Grant)은 QTI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현금지원(Cash Grant)보다는 QT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조세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토론 2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 조세와 지속가능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 수명의 급속한 연장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가구구조

의 변화, 연령대별 구성 변화, 세대내·세대간 재분배와 이전 및 교차보조 문제, 생애주기 재분배, 사회적 위험의 재분배적 관점에서 총체적인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제는 1년 단위의 횡단면적 형평성에 치중하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수명 연장에 따라 중장기적·생애주기적 관점의 재분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물리적 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경제적 수명은 단축되어 생애소득의 변동성(Volatility)이 확대되고 있다. 즉, 소득세 누진과세로 인해 생애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의 변동성이 크면 생애소득세 부담이 가속적으로 높아져 생애소득세 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이 훼손된다. 현행 누진세 구조가 생애소득이 동일함에도 소득 변동성이 큰 납세자를 역차별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수 누수가 없도록 탈루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조세 제도상의 수평적·수직적 불공평 해소가 요청된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 대해 과소하게 공제를 적용하는 데 따른 근로소득세와의 실효세율 역전 현상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즉,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만큼 동일한 수준의 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간의 실효세율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소득에도 동일 수준의 공제를 적용하고, 근로소득공제 등과 같이 ‘묻지마’ 형태의 공제제도를 단계적 축소 후 폐지하고, 인적공제 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편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분배 효과에 초점을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제도의 누수를 완화하는 방안 중 하나는 제도 및 세정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누수비율이 작은 소비세원의 비중을 높이고 누수비율이 높은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소득과세와 관련해서는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공제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고(한계)세율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0%를 넘지 않고, 건강보험료, 공적연금기여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최고한계세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면세자 비율이 여타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공제수준의 실질적인 축소가 바람직하며, 현실적으로 공제수준의 절대액을 축소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일정기간(5~10년 정도) 공제수준을 현행 수준에 묶어 두고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에 연동하여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 외에 다른 세목에 대한 의견도 덧붙이자면,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을 유지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20% 수준 또는 필요시 그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왜곡 효과가 큰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 등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산과세는 본연의 기능, 즉 지방공공재에 대한 가격 또는 비용 부담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단일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성 및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수의 납세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 효과만 있을 뿐 왜곡 효과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재산과세의 목적·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상속증여세는 과거에

소득세 과세가 보편적이지 않고 탈세 등에 따라 과세불공평 문제가 심각하였던 시절에 소득세 과세의 누수를 보완하기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서 기능하였는데, 소득세가 정상 과세에 근접한 현재는 오히려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고 세대 간 자원이전을 저해하여 저혼인·저출산을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과의 투자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및 명시적·암묵적인 각종 규제의 완화·철폐는 필수사항이다. 물론 외국인 투자 증대를 위한 조세 및 각종 재정적 지원의 범위와 수준은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 총량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 보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세원침식을 예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확대의 목적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과 시장잠재력 확대에 있는 만큼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칫 내국법인에 대한 역차별 현상과 국내 자본의 유출 방지 및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유턴 등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의 균형 회복 및 시장 여건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개방경제에서 과세제도 또는 감면제도가 세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본 유출입 증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세원분포와 규모의 절대 크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세원분포 또는 특정 시점에서의 과세 영향뿐만 아니라 자본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미래 시점에서의 세원분포와 세수 영향은 물론이고 외국인투자 증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 창출 기여 등에

미치는 구조적인 효과도 함께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세정책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여론의 향방에 따라 조세개편 방향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인기정책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정책방안·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필요시 전문가들(학계, 국책연구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수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 3

안종석 | 가운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첫 번째 발표자께서 제시한 소득세제 정책 제안 중에 기본공제 중심으로 공제체계를 전환하고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공제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세수 감소를 방지하면서 공제체계를 개편하여 기본공제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기존의 공제제도 중 어떤 것을 폐지하고 기본공제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공제제도 중 폐지 대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교육비 공제제도라고 생각한다.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 세부담을 과도하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소득이 8천만원이면 5.2%, 1억원이면 7.6%, 2억원이면 13.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교육비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대학생에게도 상당한 규모의 국가장학금이 제공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공제규모와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면세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2.5%인데, 이는 면세자 비율이 급등하기 직전 연도인 31.3%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보다는 세금, 사회보험료,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소득계층의 세후 순소득의 분포를 확인하고, 그 분포를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소득세 정책은 그 분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검토하여 공제규모, 면세자 규모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한 이후에 물가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를 설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중간소득계층 이하의 실효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최고세율은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누진도가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고세율을 소수의 고소득층에게만 적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최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초과 누진세율 체계하에서는 중간소득계층부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소득이 1억원인 납세자의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3억원이 넘어야 비로소 소득세 실효세율이 20%를 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법인세 정책에 대한 개별 국가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실효세율을 낮추지 않으면서 조세지원을 하려면 그 지원은 적격세제인센티브(Qualified Tax Incentives)에 해당되어야 하며, 적격세제인센티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부보조금이나, 재정지원, 실물투자과 무관한 단순 세액감면, 납세자별 차별적 지원 등은 적격세제인 센티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적인 조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세율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실제 부담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국내 세수입을 해외(투자자 거주지 국가)로 이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조세지원을 축소하고 세율을 낮춰서 국내·외 기업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토론 4

최승재 |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두 번째 발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 태양광, 풍력 발전 부품 및 핵심 광물 등 친환경 에너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현금 환급(Direct Pay)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과거 제조업 아웃소싱으로 인해 붕괴된 자국 내 공급망을 재건하고,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세제를 포함한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의문이 있다. 만일 이러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이는 국내 기업을 위한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부여하거나 연구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내국세법에서 강화하는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첫 번째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의 세율 및 공제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 현대 조세정책은 단순히 개별 세목의 누진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순부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와 정부의 각종 현금성 보조금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토론 5

변광욱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정책관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재편이라는 변곡점에서 있다. 그간 조세정책 당국은 국가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과 더불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소득재분배의 형평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다각화된 변수들은 기존의 정형화된 세제 틀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실무 담당자로서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소득세제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제도

안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2026년 6월 이후 우리 기업들은 처음으로 고도의 복합적인 계산 체계 구조인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정책 당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단순히 실효세율의 변동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제도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남은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과 ‘납세자의 이행 가능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기업규모별 납세 협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에 집중하고자 한다. 

Kipf

동향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무부, OECD 필라2의 미국 기업 면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

- ◆ 미국 재무부, 미국 기업의 OECD 필라2 면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2026. 1. 5.)
- 재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했던 OECD 필라2 합의안에 대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참여국과 협의하여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필라2 적용을 면제받고,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도록 하는 필라2 병행체계 합의안을 도출함
- 이번 합의에 대해 재무부는 미국과 타국의 조세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부당한 역외 과세권 행사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했다고 평가함
- 또한 재무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 및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캐나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 발표

- ◆ 캐나다 총리는 2026년 2월 5일 자동차 산업 전략(Automotive Strategy)의 일환으로, 생산성 슈퍼 공제(Productivity Super-Deduction)와 무공해 기술 세액 감면(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발표함
- (생산성 슈퍼 공제) 기업이 캐나다 내 제조 설비, 건물, 연구개발(R&D), 특허 및 데이터 인프라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0% 이상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무공해 기술 제조사 세액 감면)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일반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함
- (청정 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리튬, 니켈 등) 가공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로 직접 환급함
- (실질 법인세율 인하)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주 정부 세금과 합산한 캐나다의 한계 실효세율을 미국보다 약 4%p 낮은 약 13% 수준으로 맞춤

◆ 당해 정책은 2025 가을 예산안에 발표되었던 세제들과 기존의 세제 혜택들을 자동차 산업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함



아일랜드

DAC3 이행 규정 업데이트와 이에 따른 DAC8 이행 지침 변경 발표

-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6년 2월 4일, DAC3 관련 세무 관세 매뉴얼(Tax and Duty Manual, TDM)을 업데이트하여 자동 정보 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적용 범위 확대를 발표함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특정 국경 간 사전 판정(Cross-border tax ruling)에 자연인(개인)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DAC3를 확대 개정함
- 기존 이행 지침은 법인 및 기타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둘 이상의 국가가 연관된 국경 간 사전 판정이나 다국적 기업 내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s, APA)에 실질적으로

관여되어 해당 거래의 주체로 간주될 경우,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교환 대상에 포함되었음

- ◆ 업데이트된 DAC3 이행 지침에 따라 DAC8 이행 지침 또한 후속적으로 변경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에게 발급된 국경 간 세무 사전 판정(Advanced Cross-border tax ruling)이 EU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교환됨

- ◆ 아울러 이번 세무 관세 매뉴얼(TDM) 업데이트에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 보고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및 DAC8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추가됨



프랑스

2026년 「재정법」(Finance Bill) 최종 채택

- ◆ 프랑스 정부는 2026년 2월 2일, 주요 세목별 개편안을 담은 2026년 「재정법」을 최종 채택함
- 동 법안은 개인지배 지주회사가 보유한 사치 자산에 대한 신규 과세 도입, 대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

분담금의 적용기간 연장, 고소득자 대상 차등 기여금의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함

- ◆ (법인세) 법인세는 개인지배 지주회사 과세 신설, 대기업 법인세 추가분담금 연장, 필라2(GloBE) 및 DAC9 관련 내용이 포함됨
- 개인지배 지주회사가 보유한 사치 자산에 대한 신규 과세를 도입함
- 대기업 대상 한시적 법인세 추가분담금을 2026년까지 1년 연장함
-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일부 개정함
-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소득세율 구간 조정 및 고소득자 차등 기여금(CDHR) 적용기간 연장 관련 내용이 포함됨
- 개인 소득세율 구간을 물가상승률(0.9%)에 맞춰 조정함
- 2025년 「재정법」으로 도입된 CDHR을 2026년에도 유지하고, 「결산법」(settlement law)상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 미만으로 보고되는 연도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함
- ◆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목) 제3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신규 부과금을 도입함



독일

세무 자문법, 부동산취득세, 지방영업세 등 세법 개정 추진

- ◆ 독일 정부는 세무 자문법 현대화, 부동산 취득세법(GrEStG) 과세 정합성 확보 및 지방영업세(Gewerbesteuer) 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함
- 독일 연방정부는 아래 내용의 세무 자문법과 기타 세법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 「세무 자문법 및 기타 세법 개정을 위한 제9차 법률안」을 승인함
- (세무 자문법 현대화) 무상 세무 상담 가능 대상을 친족 외 가까운 지인으로 확대하고, 대학 내 세법 클리닉 운영을 허용함
- (세무사 추가 상담소의 운영 요건 완화) 별도 세무사 지정이나 특별 허가 없이 추가 상담소 운영을 허용함
- (부동산 취득세법 개정) 계약 체결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다른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 (지방영업세 최소 세율 인상)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영업세 가산세율(Hebesatz)의 최저 한도를 200%에서 280%로 인상함



이탈리아

입국 근로자 조세특례(impatriati)의 적용 기준 해석 명확화

-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입국 근로자 조세특례(impatriati)가 고용주의 국적이나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이탈리아로 세법상 거주지를 이전한 근로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입국 근로자 조세특례는 외국 고용주를 위한 원격 근무자뿐 아니라 동일 이탈리아 고용주 소속의 종전 국경 근로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적용될 수 있음
- 즉, 고용주의 국적·소재지나 근로 형태는 핵심 판단 요소가 아니며, 근로 수행 장소나 고용주 소재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음
- ◆ 입국 근로자 조세특례는 실질적 거주지 이전과 이탈리아 내 근로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스마트 워킹과 국경 근로도 이에 포함됨
- 외국 고용주를 위한 원격근무라도 근로활동이 이탈리아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주로 수행되면 입국 근로자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 동일 이탈리아 고용주 소속의 국경 근로자도 거주지를 이탈리아로 재이전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며, 해외 거주 기간 중 근로 장소는 제한되지 않음
- 종전 제도에서의 스마트 워킹·외국 고용주 관련 해석은 현행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유효함



벨기에

대규모 개인소득세 개편안 의회 제출

- ◆ 벨기에 정부는 개인소득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2026. 1. 13.)
- 기본 비과세 한도를 2031년까지 15,600유로로 인상하고 2030년부터 일반 소득세율표에 통합함
- 부양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혼인소득 분할 제도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가구 관련 공제체계를 조정함
- 연금·질병·장애 소득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정 금액 초과 시 배제함
- 실업급여 감면을 폐지하고 일시적 대체소득은 과세 후 세액감면 방식으로 조정함
- 초과근로시간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은퇴자의 추가 근로소득에 33% 세율을 적용함
- 일시적 소득에 대한 소액면세를 도입하고 자영업자 사업자 공제를 신설하며, 사전납부 부족 가산세를 폐지함
- 현물급여 초과분에 7.5% 세율을 적용하고 임원 최소급여 기준을 상향함
- 단독가구 특별 사회보장분담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함



스위스

맞벌이 부부의 공동 과세 제도 폐지 추진

- ◆ 스위스 연방정부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현행 공동 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부부 개별 과세(Individual Taxation)를 도입하는 세제 개편안을 승인함
- 동 개편안은 기혼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던 기존 방식에서, 각 배우자를 독립된 납세자로 보는 개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결혼에 따른 세부담 가중 해소를 핵심 목적으로 함
- 이번 개혁은 약 67만쌍의 부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전체 세수는 연간 약 6억 3,000만스위스프랑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핀란드

글로벌최저한세 시행과 DAC9 정보보고 체계 정비

- ◆ 핀란드 정부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대상, 신고 방식 및 DAC9 반영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 개편 사항을 공표함(2026. 1. 30.)
-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EU 회원국 내에서 일정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국내 기업집단에도 신고 의무가 부과됨
- DAC9 반영에 따라 추가세액 관련 정보가 회원국 간 자동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되고, 모회사 또는 지정 구성기업 1곳을 통한 신고 집중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됨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는 전자신고 시스템(MyTax)을 통해 제출하며, GloBE 정보신고서(GIR), 신고 구성기업 통지서, 추가세액 신고서를 하나의 세트로 제출하도록 함
-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이며, 최초 적용 시에는 18개월로 유예되어 최초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임
- 국제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국내 규정 정비, 사전 적용해석 제도 도입 및 조세회피 방지 규정 신설을 추진 중임



네덜란드

EU DAC8 이행 법안 하원 통과

- ◆ 네덜란드 의회 하원은 2026년 1월 28일, EU 행정협력지침 제8차 개정(DAC8)을 국내법에 이행하는 법안을 가결함
- 본 법안은 유럽연합 행정협력지침 제8차 개정지침(Directive (EU) 2023/2226)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화폐(e-money) 및 암호화자산(crypto-assets) 관련 조세정보 보고 및 회원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 동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암호화자산 관련 정보보고 의무, 개인 대상 국경 간 사전판정 정보교환 확대, 제재 규정 등이 포함됨
- 동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신속한 상원 통과를 추구하고 있음



일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병행 패키지(side-by-side)' 합의 승인

- ◆ 일본 내각은 2026년 1월 23일, OECD의 '병행 패키지(side-by-side)'를 반영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정안을 승인함
- 이번 개정안은 OECD 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조정 운영을 위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 이번 개정안은 국제 조세 규범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됨



중국

주거이전 목적 주택 구입 시 부여하는 조세특례 규정 적용기한 연장

- ◆ 중국 정부는 2026년 1월 14일, 주거이전 목적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의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함
-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여러 세제를 개편하였으며, 조세특례 규정은 거주용 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임

- 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은 거래 비용을 낮춤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하고

위축된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목적임



호주

소규모 기업 대상 국세청의 세무 관련 제재 회피를 위한 권고사항 안내

- ◆ 호주 국세청은 2026년 2월 4일, 소규모 기업 대상 세무 관련 제재 회피를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함
- 국세청은 소규모 기업들이 기록 보관, 소득 신고, 현금 흐름 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인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주요 사항을 권고함
-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체납세액 관리, 세금 납부를 위한 별도 계좌 사용, 서류의 디지털화, 국세청의 방침 숙지, 전문가 상담, 폐업 지원 신청 등이 있음
- 아울러 올해가 소규모 기업의 성공 기반 마련을 위한 체질 개선에 적합한 시기라고 언급함



OECD

상호합의절차 운영매뉴얼(MEMAP) 개정판 발표

- ◆ OECD는 2026년 2월 2일, 조세조약상 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운영 매뉴얼(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EMAP) 2026년 개정판을 발표함
- MEMAP은 국경 간 조세조약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구속적(non-binding) 지침서로, 조세 확실성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함
- 이번 2026년 개정판에는 총 59개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각국 과세당국의 실무 경험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됨
- 2026년판 MEMAP은 분쟁 예방 및 권한당국의 조직, MAP 접근요건 및 일방 구제, 양자 협의 및 MAP 중재, 역량 강화 및 실무 템플릿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됨
-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MAP 중재(arbitration)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모범사례가 최초로 포함되어, 중재 절차 활용에 대한 실무적 예측가능성과 제도적 명확성이 제고됨

주요국의 재정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월간 재정동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 ◆ EU 이사회, 2027년 EU 예산 편성 지침 채택(2026. 2. 17.)¹⁾
- (배경) EU 연간 예산은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²⁾의 한도 내에서 편성되며, EU 이사회는 매년 EU 연간 예산안 편성의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는 예산 편성 지침을 채택함
-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의 주요 내용) EU 이사회는 내년도 예산이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연도 예산으로 EU 장기 목표와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
 - 내년 예산이 우크라이나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보여주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각종 위기 대응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2027년 예산은 실제 소요와 연계된 현실적이면서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 ▶ 2027년 예산은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한도 내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고 EU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마진(Margin)을 확보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집행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가 개정된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³⁾의 우선순위 정책에 필요한 자원 재배정을 2027년 예산안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NGEU⁴⁾ 이자 지급 비용을 기존 EU 회복기금 예산 항목에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소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 조달 방안(프로그램 집행 잔여 금액 및 우선순위 재조정, 범용 특수 기금⁵⁾ 예산 활용 등)을 모색

1) EU 이사회, "EU annual budget 2027: Council sets guidelines for next year's EU budget," 2026. 2. 1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2/17/eu-annual-budget-2027-council-sets-guidelines-for-next-year-s-eu-budget/>, 검색일자: 2026. 2. 19.
EU 이사회, "Budget guidelines for 2027-Council conclusions (17 February 2)," 2026. 2. 17.,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755-2026-INIT/en/pdf>, 검색일자: 2026. 2. 19.

2) EU의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는 7개년 재정계획을 담은 EU의 장기 예산으로 EU 우선순위에 지출 가능한 연간 예산의 최대 한도를 규정함

3)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참고

4) Next Generation EU(NGEU)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유럽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회복 패키지임

5) 특수 기금은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한도 이상으로 추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범용 특수 기금은 일반적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새로운 우선순위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임



IMF

- ◆ IMF 이사회, 독일과의 연례협의⁶⁾ 결과 발표(2026. 2. 12.)⁷⁾
 - (현황 및 전망) 2022년 에너지 가격 충격과 고금리 긴축 정책의 여파로 2023~202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4년 후반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나,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로 회복 속도는 제한적인 상황임
 - 2025년에는 독일 당국의 채무제동장치(Debt Brake)⁸⁾ 개혁이 경제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2026~2027년에 계획된 재정 완화(fiscal easing) 정책과 과거의 통화 완화(monetary loosening) 정책의 지연된 효과는 향후 몇 년 동안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위험) 독일은 높은 지정학적 긴장 및 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 높은 무역 개방도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 디지털 전환 및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지연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중기성장이 제한되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정책 권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공공투자 확대, 높은 유효 한계소득세율(effective marginal income tax rates)⁹⁾ 인하, 국방 등 국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자원 집중이 필요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정책은 지양할 것을 권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국방비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에

표 1 독일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질GDP 성장률(연평균)	-0.5	0.2	1.1	1.5
실업률	3.4	3.7	3.6	3.3
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 연평균)	2.5	2.3	2.3	2.0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scal balance, GDP 대비 %)	-2.7	-2.4	-3.4	-4.1
일반정부 공공채무(General government Public debt, GDP 대비 %)	62.2	62.6	63.9	65.7
경상수지(GDP 대비 %)	5.8	4.5	4.2	4.0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26,634			

주 1. 2024년은 추정치(Estimation), 2025, 2026, 2027년은 전망치(Projections)
 2. 쿼터는 2025년 11월 30일 기준

출처 IMF, Germany: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2026. 2. 12.

6)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간 점검 활동
 7)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Germany," 2026. 2. 12.,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6/02/11/pr26042-germany-imf-executive-board-concludes-2025-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6. 2. 19.
 8) 2009년 헌법에 채무제동장치를 규정하여 적용 중이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경우 구조적 균형예산이 요구됨
 9) 추가 소득에 대해 실제로 부담되는 세율(세금 + 사회보험 + 복지혜택 감소)로 실질적인 추가 소득에 대한 부담률의 의미

대응하기 위해 지출검토(Spending Reviews)와 연금개혁 등 재정 건전화 노력 병행 필요

◆ IMF 이사회, 호주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6. 2. 15.)¹⁰⁾

- (현황 및 전망) 2024년의 부진을 지나 민간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2025년 3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은 2.1%로 반등하였으며, 경제 회복세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차효과와 소비자 심리 개선이 민간 수요 및 투자를 뒷받침하며, 실질GDP 성장률은 2025년 1.9%, 2026년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상반기까지 하락하던 인플레이션은 최근 근원 물가가 3%를 상회하며 다시 반등하는 양상임.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국면을 벗어나 완화되고 있으나, 실업률(4.3%)은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위험) 글로벌 무역 긴장 심화, 금융시장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와 같은 대외적 위협은

수요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국내적으로는 강한 노동시장(strong labor markets)과 생산여력 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반대로 국내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경우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음

- (정책 권고) 중기적 재정 건전화를 통해 미래 위험 대응력을 확보하는 한편, 규제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에 주력해야 함
- 데이터에 기반한(data-dependent)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이 필요함.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를 조화시키되, 불확실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경계가 중요
- 중기적인 재정건전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대외 불균형 해소를 지원할 필요. 또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포괄적인 조세 및 지출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함
- 주택 공급 제약 해소를 위한 통합 전략 수립, 규제 간소화, 기술 도입 촉진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함

표 2 호주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질GDP 성장률(연평균)	1.0	1.9	2.1	2.2
실업률	4.0	4.3	4.4	4.4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3.2	2.8	3.4	2.7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primary balance, GDP 대비 %)	-1.2	-2.1	-1.8	-1.0
일반정부 총채무(General government Public debt, GDP 대비 %)	50.0	51.4	51.5	51.2
경상수지(GDP 대비 %)	-2.2	-1.9	-2.1	-2.2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6,572			

주 1. 2024년은 추정치(Estimation), 2025, 2026, 2027년은 전망치(Projections)
 2. 쿼터는 2025년 11월 30일 기준

출처 IMF, Australia: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2026. 2. 15.

10)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Australia," 2026. 2. 15.,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6/02/12/pr-26046-australia-imf-executive-board-concludes-2026-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6. 2. 19.

- ◆ IMF 이사회, 중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6. 2. 18.)¹¹⁾
- (현황 및 전망) 중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직면한 여러 충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으며, 2025년 실질GDP 성장률은 견조한 수출과 정책 부양책에 힘입어 당국의 목표치인 5%를 달성함. 2026년의 실질GDP 성장률은 관세 부과와 장기화 효과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가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근원물가는 서서히 오를 것으로 예상
 - 중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 투자 수익률 저하, 생산성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위험) 중국 경제의 국내 위험요인으로는 부동산 부문의 예상보다 깊은 위축으로, 높은 부채 수준과 결합되어 내수 약화 심화, 디플레이션의 고착화,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외적으로는 무역긴장의 재고조가 핵심적인 하방 위험요인이나, 추가적인 정책 부양책이나 무역긴장의 협력적 해결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책 권고) 내수 부진의 장기화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으며, 향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로 인해 중기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때까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
- 미완공 선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자금 투입 등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정리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함. 또한,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와 건설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중기 성장을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국유-민간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시장중심의 기업부문 개혁 추진이 중요

표 3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질GDP 성장률(연평균)	5.0	5.0	4.5	4.0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0.2	0.0	0.9	1.5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general budgetary government structural balance, GDP 대비 %)	-7.0	-8.5	-8.5	-8.3
일반정부 채무(general budgetary government debt, GDP 대비 %)	60.9	68.4	75.1	78.9
경상수지(GDP 대비 %)	2.3	3.3	3.1	2.8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30,482			

- 주 1. 2024년은 추정치(Estimation), 2025, 2026, 2027년은 전망치(Projections)
- 2. 쿼터는 2025년 1월 15일 기준
- 3. 중국의 일반정부 재정지표는 공식 예산(Budgetary) 체계 내 수치로,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등 예산 외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재정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지표도 공식적인 정부 채무만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우발채무 및 LGFV 부채가 포함된 타 국가의 일반정부 총채무(Gross Debt)와 직접 비교 시 유의 필요

출처 IMF, China: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2026. 2. 18.

11)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China," 2026. 2. 1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6/02/18/pr-26053-china-imf-executive-board-concludes-2025-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6. 2. 20.



OECD

- ◆ OECD, 2025년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6. 2. 10)¹²⁾
 - OECD 회원국의 2025년 3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0.3%를 나타냈으며,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0.5%를 기록
 - 2025년 3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데이터가 제공된 20개국 중 11개국은 증가, 8개국은 감소, 1개국은 변동 없음
 - G7 국가의 1인당 실질가계소득 성장은 정체(0.0%) 되었으며,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감소세가 나타남
 - ▶ G7 국가 중 영국은 2025년 3분기에 가장 큰 폭의 하락 (-0.8%)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소득 및 재산세 인상에 기인한 것이며, 같은 기간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정체(0.0%)
 - ▶ 캐나다와 프랑스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각각 -0.1%과 -0.3%로 감소한 반면,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각각 0.5%와 0.4%로 증가세를 보임
 - ▶ 미국은 소비자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이 -0.1%이며,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0.9%를 기록
 - ▶ 이탈리아는 근로소득과 순재산소득 증가로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1.7%를 기록
 - ▶ 독일 역시 근로소득 증가에 힘입어 0.5%의 성장세를 보임
 - 기타 OECD 회원국 중 헝가리가 1인당 실질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증가율(1.6%)을 기록했으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국가는 네덜란드(-1.6%)*임

* 근로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사회보장기여금(net social contributions) 및 소득재산세 인상이 이를 상쇄하며 감소를 기록

표 4 분기별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0.3	0.5	1.1	0.2	0.4	0.5	0.2	0.3	0.3
G7	0.1	0.4	0.9	0.7	0.1	0.1	0.3	0.4	0.0
캐나다	1.0	-0.2	-0.2	1.0	1.2	0.0	-0.3	0.5	-0.1
프랑스	0.5	0.8	0.7	0.5	0.8	0.0	-0.2	0.2	-0.3
독일	-0.8	0.0	1.0	0.2	0.5	-0.1	-0.6	0.4	0.5
이탈리아	0.6	0.3	0.2	0.8	0.1	-0.4	0.9	0.9	1.7
일본	0.0	-0.6	1.4
영국	-0.4	0.3	1.5	0.1	2.0	1.1	-0.9	0.2	-0.8
미국	0.1	0.6	0.8	0.3	0.1	0.4	0.5	0.3	-0.1

-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 2. ..는 데이터 없음
- 3. 본 자료는 발간시점을 기준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모든 OECD 국가의 추정치를 보여줌

출처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3rd quarter 2025," Table 1, p. 3, 2026. 2. 10.

12) OECD, "Real household income stagnates in the G7 area in the third quarter of 2025," 2026. 2. 10.,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6/02/growth-and-economic-well-being-third-quarter-2025-oecd.html>, 검색일자: 2026. 2. 11.

표 5 분기별 1인당 실질GDP 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0.2	0.2	0.2	0.3	0.5	0.3	0.2	0.5	0.5
G7	0.3	0.3	0.0	0.4	0.5	0.3	0.1	0.5	0.5
캐나다	-0.8	-1.0	0.1	0.2	0.2	0.1	0.3	-0.5	0.5
프랑스	0.2	0.4	0.0	0.1	0.3	-0.1	0.0	0.2	0.4
독일	-0.1	-0.4	-0.1	-0.3	0.0	0.2	0.4	-0.2	0.0
이탈리아	0.0	0.1	0.2	0.3	0.1	0.0	0.4	0.0	0.2
일본	-1.2	0.6	-0.4	0.3	0.8	0.5	0.5	0.6	-0.4
영국	-0.5	-0.6	0.5	0.3	0.2	0.2	0.6	0.1	0.0
미국	0.9	0.6	0.0	0.6	0.6	0.3	-0.3	0.8	0.9

-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 2. 본 자료는 발간시점을 기준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모든 OECD 국가의 추정치를 보여줌
- 출처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3rd quarter 2025", Table 2, p. 3, 2026. 2. 10.

- ◆ OECD,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6. 2. 19.)¹³⁾
- 2025년 4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0.3%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G7 국가의 실질GDP 성장률은 국가별로 혼재된 모습을 보이며 전분기(0.0%) 대비 소폭 증가한 0.2%를 기록
- 독일과 이탈리아의 실질GDP 성장률은 각각 0.0%→0.3%, 0.2%→0.3%으로 상승하였으며, 두 나라의 성장은 가계와 정부 소비의 증가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투자 증가도 실질 GDP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

- 프랑스는 재고조정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지속적 인 부담을 주어 4분기 GDP 성장률이 이전분기 0.5%에서 0.2%로 둔화
- 캐나다는 GDP 성장률이 전분기 0.6%에서 4분기에 -0.1%로 감소했고, 영국의 GDP 성장률은 0.1%를 유지
- 일본은 전분기 -0.7%에서 4분기 GDP 성장률이 0.1%로 회복되었는데, 이는 주로 투자 증가에 기인
-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13) OECD, "GDP growth continues to show a mixed picture across OECD countries in Q4 2025," 2026. 2. 19.,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6/02/gdp-growth-fourth-quarter-2025-oecd.html>, 검색일자: 2026. 2. 20.

표 6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Q4	Q1	Q2	Q3	Q4	Q1	Q2	Q3	Q4
OECD	0.2	0.4	0.3	0.5	0.5	0.5	0.4	0.4	0.3
G20	0.7	0.7	0.7	0.9	0.9	0.8	0.9	0.9	..
유럽연합	0.1	0.3	0.3	0.4	0.5	0.5	0.3	0.4	0.3
유로지역	0.1	0.1	0.2	0.3	0.3	0.6	0.1	0.3	0.3
G7	0.1	0.1	0.2	0.3	0.3	0.4	0.1	0.0	0.2
캐나다	0.1	0.7	0.8	0.8	0.7	0.5	-0.5	0.6	-0.1
프랑스	0.4	0.1	0.2	0.4	0.0	0.1	0.3	0.5	0.2
독일	-0.3	-0.1	-0.3	0.0	0.2	0.4	-0.2	0.0	0.3
이탈리아	0.2	0.1	0.3	0.1	0.1	0.3	0.0	0.2	0.3
일본	0.5	-0.6	0.2	0.7	0.5	0.3	0.5	-0.7	0.1
영국	-0.3	0.8	0.6	0.2	0.3	0.7	0.2	0.1	0.1
미국	0.8	0.2	0.9	0.8	0.5	-0.2	0.9	1.1	..

-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는 데이터 없음
 3. G20 데이터는 보통 한 분기 지연되므로 2025년 3분기까지 제공. G20 합계에는 전체 기간 동안 미국 포함

출처 OECD, "GDP growth continues to show a mixed picture across OECD countries in Q4 2025," Table1, 2026. 2. 19.



미국

-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6~2036 예산·경제전망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6 to 2036) 보고서¹⁴⁾ 발표(2026. 2. 11.)¹⁵⁾¹⁶⁾
 - 의 공백이 해소된 이후 경제활동이 반동하면서 1.9%(‘25) → 2.2%(‘26) 증가 전망
 - CBO는 본 전망에 대해 지난 해 초 이후 발생한
 - ① 2025 트럼프 감세법 ② 고관세 무역정책 ③ 이민정책 등의 정책 변화가 경제적 영향에 크게 반영되었음을 언급
- (경제성장) 2026년 실질성장률¹⁷⁾은 트럼프 감세법¹⁸⁾의 영향으로 소비자 지출과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섣다운 발생으로 지연되었던 세출예산

14) 동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예산안 발표 시점인 2월 전인 매해 1월경에 발표되나, 시기는 유동적임

15)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6 to 2036*, 2026. 2. 11., <https://www.cbo.gov/publication/61882>, 검색일자: 2026. 2. 13.

16) 동 보고서의 예산 전망은 2026년 1월 14일까지 입법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 경제 전망의 경우, 경제 동향 및 법률은 2025년 12월 3일, 무역정책은 2025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작성

17) 직전년도 4분기 대비 증가율(Change from fourth quarter to fourth quarter)

18)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또는 Working Families Tax Cut Act로 불리고 있음

표 7 미국 경제 전망

(단위: %)

전망치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31~2036년)
	실적	추정	전망			
실질GDP 상승률 ¹⁾	2.3	1.9	2.2	1.8	1.8	1.8
인플레이션(CPI) ¹⁾²⁾	2.7	3.0	2.8	2.4	2.3	2.3
실업률 ³⁾	4.0	4.3	4.6	4.5	4.5	4.2

주 1)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변화율(change from 4th quarter to 4th quarter)

2) Urban

3) 연평균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p. 5, 2026. 2. 11.

- ▶ (① 2025 트럼프 감세법) 동법¹⁹⁾은 2026년과 2027년의 연방지출을 증가시키나, 이후 연도에는 지출을 감소시키고,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노동공급과 투자를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생산성 증대
- ▶ (② 고관세 무역정책) 무역정책 변화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감소시키며 미국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
- ▶ (③ 이민정책) 순이민 감소는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 ◆ (재정수지)²⁰⁾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실적치 대비 4.4% 증가한 1조 8,530억달러 → 2036회계연도에는 3조 1,150억달러 전망
- (연방채무) 2026회계연도 말 기준, GDP 대비 연방채무는 전년 실적치(99.4%) 대비 1.2%p 증가한 100.6%로 전망 → 2036회계연도에는 역대 최고 점인 GDP의 106.1%²¹⁾를 넘어 120.2% 전망
- (수입) 2026회계연도 연방수입은 전년 실적치 대비 6.9% 증가한 5조 5,960억달러로 전망 → 2036회계연도에는 8조 3,010억달러 전망
- GDP 대비 기준, 수입은 2027회계연도 17.7% → 2028회계연도에 17.5%로 하락하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2036회계연도에 17.8% 전망
- (지출) 2026회계연도 연방지출은 전년 실적치 대비 6.3% 증가한 7조 4,490억달러 → 2036회계연도에는 11조 4,160억달러 전망
 - GDP 대비 기준, 지출은 2026, 2027회계연도에서 동일한 23.3%를 보이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36회계연도에는 24.4% 전망
 - 인구 고령화 및 연방 보건비용의 빠른 증가 속도에 기인한 사회보장 지출 및 메디케어 등의 의무지출의 증가로 GDP 대비 의무지출이 확대되고, 재정지출은 규모는 지속 증가하나 GDP 대비 수치는 감소세 전망

19) CBO는 소득세를 인하, full expensing of certain investments(특정 투자자산의 비용을 구매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 즉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거론하고 있음

20) 재정수지와 지출 규모는 회계연도 첫일이 주말일 경우 일어나는 지출 시기변경 등의 영향을 제거한 결과(adjusted for timing shift)값임

21) 연방 채무는 1945회계연도에 103.9%를 기록한 후, 1946회계연도에 역대 최고 수치인 106.1%를 기록

표 8 미국 예산 전망

재정전망	실적						전망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	2036년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3,462	3,421	4,047	4,896	4,439	4,918	5,235	5,596	5,885	6,071	...	8,301
지출	4,447	6,550	6,822	6,272	6,135	6,750	7,010	7,449	7,772	8,151	...	11,416
재정적자	984	3,129	2,775	1,375	1,695	1,832	1,775	1,853	1,887	2,080	...	3,115
연방채무 ¹⁾	16,803	21,017	22,284	24,257	26,240	28,199	30,172	32,095	34,005	36,093	...	56,152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6.3	16.3	18.1	19.6	16.5	17.1	17.2	17.5	17.7	17.5	...	17.8
지출	21.0	31.2	30.5	25.1	22.7	23.4	23.1	23.3	23.3	23.5	...	24.4
재정적자	4.6	14.9	12.4	5.5	6.3	6.4	5.8	5.8	5.7	6.0	...	6.7
연방채무 ¹⁾	79.2	100.1	99.6	97.0	97.3	97.8	99.4	100.6	102.1	104.1	...	120.2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Table B-1, 각 년도

일본

- ◆ 일본 내각부, 「2025회계연도 일본 경제 보고서」 발표 (2026. 2. 10.)²²⁾
- (일본 경제 동향과 과제) 2025년 일본 경제는 일미 관세 합의로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²³⁾되었으나 물가 상승과 임금의 실질 개선 부진으로 소비 회복이 제약되는 가운데, 경제의 공급력 제고를 통해 임금-물가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
- 2025년 7월 일미 간 관세 협상 합의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되었으나,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으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이 상존
-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 경제의 공급력 제고를 통해 임금과 물가가 상호 연동하여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임금-물가 선순환’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
- (성장형 경제의 실현을 위한 과제) 물가 상승의 영향, 임금·생산성 여건, 기업 행동의 변화가 맞물리는 가운데, 성장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물가 부담의 완화와 임금 상승의 확산, 생산성 제고 및 기업 성장 기반 강화가 중요
- 국가 전체로는 임금 상승이 확산되는 모습이나, 연령·산업별로는 확산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도 확인되어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임금 인상의 전면적 확산’이 과제로 제시

22) 일본 내각부, 「2025年度 日本経済レポート—物価高を乗り越え、「強い経済」の実現へ—」, 2026. 2. 10., https://www5.cao.go.jp/keizai3/2025/0210nk/pdf/n25_all.pdf, 검색일자: 2026. 2. 19.

23) 상호관세에 따른 추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은 합계 27.5%에서 15%로 인하

- 임금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가 필수이며, 인적 투자 및 자기계발 참여가 낮은 점 등이 생산성 부진의 요인으로 지적
-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M&A가 생산성을 유의하게 제고하는 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생산 효율화·기업 재편을 뒷받침하는 제도·환경 정비를 통해 경제 전반의 성장력을 제고할 필요



독일

- ◆ 독일 경제·에너지부, 「2026년 연간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6)」 발표(2026. 1. 28.)²⁴⁾
- (경제 전망) 2026년 독일의 실질GDP는 재정 부양책과 내수 회복으로 1.0% 성장하면서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물가) 2026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하락과 행정비용 경감 조치에 따라 2.1% 수준으로 하락하여 유럽중앙은행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투자) 인프라·기후특별기금(SVIK)과 정률상각 특별(Investitionsbooster)을 동력삼아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287억유로 규모의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
- (재정 전망) 2026년 독일은 인프라·기후특별기금(SVIK)과 채무제동장치 예외규정을 활용한 투자 확대에 의해 단기적으로 채무비율과 적자가 증가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병행할 예정



프랑스

- ◆ 프랑스 총리, 헌법위원회²⁵⁾에 2026년 예산법안(PLF 2026)²⁶⁾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합치 심사 회부(2026. 2. 9.)²⁷⁾
- (현황) 프랑스 하원이 2026년 예산법안을 채택한 지 2일 뒤인 2026년 2월 4일에 프랑스 총리는 헌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예산법안의 일부 조항을 헌법위원회에 회부

24) 독일 경제·에너지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6," 2026. 1. 28.,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DE/Publikationen/Wirtschaft/jahreswirtschaftsbericht-2026.pdf?__blob=publicationFile&v=221, 검색일자: 2026. 2. 3.

25)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 합치 심사, 의회 및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 절차 등에 관한 소송을 전담하는 기관임

26)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6

27) 프랑스 헌법위원회,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sites/default/files/2026-02/2026901dc_saisinepm.pdf, 검색일자: 2026. 2. 9.

표 9 2026년 예산법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4 (실적)	2025 (실적 전망)	2026 (예측)	2023-2027 중기재정법안 2026년 전망
재정수지(Solde effectif)	-5.8	-5.4	-5.0	-2.7
재정지출 증가율(Evolution de la dépense publique hors crédits d'impôt en volume(%))	2.1	1.7	0.8	0.5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2.8	43.6	43.9	44.4
재정지출(Dépense publique (hors crédits d'impôt))	56.6	56.8	56.6	54.4
공공채무(Dette au sens de Maastricht)	113.2	115.9	118.2	109.6

출처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6-103 du 19 février 2026 de finances pour 2026 (1)," 2026. 2. 19.

- (배경) 헌법 합치 심사는 통상적으로 정부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야당 등 의회 측에서 활용하나, 프랑스 총리는 과세 강화 조항에 대하여 법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사전 해소하고자 자발적 심사를 요청
- (주요 내용) 총리의 심사 요청으로 헌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 법안 조항은 핵심 과세 조항 3가지로, 총리는 심사 요청 서한에 해당 조항들이 갖는 목적인 조세회피 방지의 중요성과 법적 타당성 검토 필요성에 대해 역설
 - ◆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예산법(LFI 2026)²⁸⁾ 최종 승인 및 공포(2026. 2. 19.)^{29) 30)}
 - (주요 내용) 헌법위원회는 2026년 예산법안의 법률 제정 절차를 승인하며 주요 조항들이 헌법에 부합함을 선언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상 유보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구조(aide juridictionnelle) 대상이 아닐 시 형사 소송비용 부과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주거지원금(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수급 자격 제한 등 2개 조항에 대해 해석상 유보를 표명
 - (예산 목표)³¹⁾ 2026년 프랑스는 GDP 대비 재정적자 5.0% 및 공공채무 118.2%를 목표

28) Loi de finances pour 2026

29) 프랑스 헌법위원회, "Décision n° 2026-901 DC du 19 février 2026 - Communiqué de presse," 2026. 2. 19.,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actualites/communiquede/decision-n-2026-901-dc-du-19-fevrier-2026-communiquede-presse>, 검색일자: 2026. 2. 23.30)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포털,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6," 2026. 2. 20., <https://www.vie-publique.fr/loi/300444-budget-de-letat-2026-loi-de-finances-2026>, 검색일자: 2026. 2. 23.31)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6-103 du 19 février 2026 de finances pour 2026 (1)," 2026. 2. 19.,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3508155>, 검색일자: 2026. 2. 23.



영국

- ◆ 영국 재무부, 「2025-26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 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2025-26) 발표(2026. 2. 10.)³²⁾
 - (배경)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세출예산안³³⁾에서 확정된 지출권한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매년 2월에 정례적으로 편성하여 발표
 - 이는 촉박하고 긴급한 추가 지출이 요구되어 통상적인 세출예산 과정을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특별 추가경정예산안 (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과 구분
 - (주요 내용) 2025-26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지출은 현재 계획 대비 약 569억파운드(5.2%) 증가한 1조 1,593억파운드로 수정
 - 부처별 지출한도(DEL)³⁴⁾는 5,946억파운드, 연간 관리지출(AME)³⁵⁾은 4,510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각각 318억파운드, 154억파운드 증액
 - 총 비예산 지출³⁶⁾은 1,137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97억파운드 증액
 - 총 순현금 소요액³⁷⁾은 8,906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62억파운드 감액(총 58개 부처 중 30개 부처에서 증액, 19개 부처에서 감액)

표 10 2025-2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현재 계획(a)	조정 규모(b)	수정 계획(a + b)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562,790	31,772	594,561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435,534	15,431	450,965
총 순예산(Total Net Budget)	998,323	47,203	1,045,526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	104,017	9,711	113,728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1,102,340	56,914	1,159,254
현금주의 조정(Resource to cash adjustments)	-205,566	-63,104	-268,670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	896,774	-6,190	890,584

출처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5-26 - Supplementary Estimates, 2026. 2. 10., p. 4, Table 1

32) HM treasury, "Supplementary Estimates 2025-26," Corporate report, 2026. 2. 1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pplementary-estimates-2025-26>, 검색일자: 2026. 2. 11.

33) Supply Estimates: 법률로 지출 권한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통상 5월에 발표

34)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35)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 주도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36)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출

37) 예산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 규모의 합계(발생주의 기준의 총 지출을 현금주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 영국 재무부, 「예산 정보 보안 검토 보고서」(*Budget Information Security Review*) 발표(2026. 2. 9.)³⁸⁾
- (배경) 지난 2025년, 예산안 발표(11. 26.)를 앞두고 발생한 일련의 정보 보안 이슈를 계기로 예산 정보 관리 및 보안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
 - 11월 13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FT)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소득세율 인상 계획 철회' 기사를 사전 보도
 - 예산안 발표 당일, OBR의 경제·재정 전망 보고서가 예산안 발표 예정 시각보다 약 40분 일찍 외부에 노출
 - 위 두 사건 발생 직후, 차입(국채 발행)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파운드화 약세, 국채가격 하락, 주가지수 급락 등 금융시장에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
- (목적) 예산 관련 정보의 무단 공유 및 사전 노출을 방지하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동 검토를 실시
- (주요 내용) FT 기사 관련 내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내각부의 조사 결과, 전망 보고서 조기 노출에 대한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NCSC)의 조사 결과, 예산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재무부 조치 등을 포함
 - (내부정보 유출 의혹) 내각부 조사 결과, 무단 공개의 출처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예산 관련 정보의 접근 범위 및 관리 절차 강화 필요성을 제시
 - (전망 보고서 조기 노출) NCSC 조사 결과, 해당 사안은 외부 해킹이나 사이버 침해가 아닌 게시 과정에서의 기술적 설정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 이에 NCSC는 시장민감 간행물 게시 절차의 통제 강화 및 기술적 보호조치 보안을 권고
 - (재무부 조치) 예산 관련 시장민감 정보의 분류, 접근 통제, 게시 절차 및 사전 공개 기준을 포함하여 보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
 - ▶ 예산 자료가 불필요하게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T 시스템 내 보호 장치를 구조적으로 내장(embedded)
 - ▶ 가장 민감한 예산·전망 정보에 '시장민감 예산 정보(BUDGET - MARKET SENSITIVE)' 라벨을 도입하여 정보 분류와 보안 관리를 강화
 - ▶ 예산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축소
 - ▶ 2026년 3월에 발표 예정인 경제·재정 전망 보고서의 경우 OBR 대신 재무부가 정부 종합 플랫폼인 GOV.UK를 통해 게시하고, 추후 OBR도 시장민감 정보 관련 출판물에 GOV.UK 플랫폼을 전면 도입
 - ▶ 재무부와 OBR은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협력하여 향후 보안 침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
 - ▶ 대중 및 언론에 사전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맥퍼슨 원칙(Macpherson Principles)'을 계속하여 적용

38) HM treasury, "Government publishes Budget Information Security Review," Press release, 2026. 2. 9.,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publishes-budget-information-security-review>, 검색일자: 2026. 2. 10.; HM treasury, Budget Information Security Review, 2026. 2.



호주

- ◆ 호주 중앙은행(RBA), 2026년 2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인상(3.60%→3.85%) 발표(2026. 2. 3.)³⁹⁾
- (경제) 호주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11월 전망(2.0%) 대비 성장세가 강화되어 2.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전망기간 동안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실업률은 4% 초반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망이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다소 타이트한 상태임
- (물가) 2025년 4분기 기준 근원물가상승률 연 3.4%, 소비자물가상승률 연 3.6%로 상승하는 등 지난 예상보다 높아졌고 당분간 중앙은행 목표범위(2~3%)를 상회할 가능성이 큼
- (금리) 통화정책위원회는 2026년 2월 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한동안 목표 범위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3.85%로 인상하기로 결정
- ◆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넷제로 펀드(Net Zero Fund) 시행 계획 발표(2026. 2. 4.)⁴⁰⁾
- (배경) 호주 정부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에너지 비용 및 탄소배출 감축이 호주의 생산성·경쟁력·일자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뒷받침할 50억호주달러 규모의 Net Zero Fund 시행 및 설계를 확정함
 - (목적) 대규모 산업시설을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고 넷제로 전환에 초점을 둠
 - (주요내용) Net Zero Fund는 국가재건기금 내 하위펀드로, 50억호주달러 규모의 자금으로 산업의 탈탄소화 및 저배출 기술의 국내제조 확대에 투자하며, 운용은 NRFC⁴¹⁾이 담당
 - (재원) 국가재건기금이 보유한 총 150억호주달러 재원 내에서 재배분을 통해 기존 목표인 '재생·저배출 기술 우선순위 분야에 최대 30억호주달러'에서 50억호주달러로 총액 확대
 - (지원방식)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낮은 수익을 감수하는 정책금융을 제공
 - (투자대상/범위) 핵심목표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탈탄소 투자, 에너지 효율 개선, 넷제로 전환투자이며, 국내 제조 저배출·재생 기술의 스케일업 또한 지원
 - (시행시기) 2026년 중반 시행 예정

39)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February 2026," 2026. 2. 3.,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6/feb/>, 검색일자: 2026. 2. 23.

40)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Net Zero Fund finalises design," 2026. 2. 4., <https://www.industry.gov.au/news/net-zero-fund-finalises-design>, <https://www.minister.industry.gov.au/ministers/timayres/media-releases/net-zero-funds-5-billion-world-leading-decarbonisation-finance>, 검색일자: 2026. 2. 23.

41) National Reconstruction Fund Corporation



중국

- ◆ 중국 재정부, 2025년 재정수입 및 지출 현황 발표 (2026. 1. 30.)⁴²⁾
 - (일반공공예산 수입) 2025년 중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21조 6,045억위안⁴³⁾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
 - (과세수입) 과세 수입은 17조 6,363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세, 토지 부가가치세, 차량구매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
 -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는 세외수입은 3조 9,682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
 - (일반공공예산 지출)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28조 7,395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 (중앙 및 지방정부 수입) 중앙정부 수입은 9조 3,963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고, 지방정부 수입은 12조 2,082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표 11 2025년 상반기 중국 정부 일반공공예산 지출 현황

(단위: 억위안, %)

분류	지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일반공공예산 지출 합계	287,935	1.0
중앙정부	43,034	5.7
지방정부	244,361	0.2
(주요 지출 항목)		
교육비 지출	43,417	3.2
과학기술 지출	12,062	4.8
문화·관광·체육·미디어 지출	3,946	2.2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	44,416	6.7
보건의료비 지출	21,446	5.7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지출	5,816	6.1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 지출	20,664	-5.0
농업, 임업, 수산업 지출	23,495	-13.2
교통 운송 지출	11,977	-0.7
부채이자 지불	13,491	4.8

출처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25年财政收支情况」, 2026. 1. 30., https://gks.mof.gov.cn/tongjishuju/202601/t20260130_3982923.htm, 검색 일자: 2026. 2. 19. 바탕으로 저자 작성

42)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25年财政收支情况」, 2026. 1. 30., https://gks.mof.gov.cn/tongjishuju/202601/t20260130_3982923.htm, 검색 일자: 2026. 2. 19.

43) 2026년 2월 23일 고시환율 기준 1위안은 약 209.5원

- 각 지출 부문에서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농업·임업·수산업 부문에서 -13.2%의 큰 지출 감소와 함께 도시 및 농촌지역사회와 교통 운송 부문에서 지출이 전년 대비 감소
- (기금) 2025년 기금 수입은 5조 7,704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하고, 기금 지출은 11조 2,874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
- (국유자본운영예산) 2025년 국유자본운영예산 수입은 8,547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하고, 지출은 2,647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5.1% 감소



스웨덴

- ◆ 스웨덴 국방부 및 재무부,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6. 2. 19.)^{44) 45)}
- 스웨덴 정부는 '2026년 추가 수정예산(Extra ändringsbudget för 2026 - Stöd till Ukraina och vaccinerberedskap, Prop. 2025/26:143)'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
- 추경안에 포함된 각종 증·감액을 모두 반영할 경우, 2026년 국가예산 총지출은 순액 기준 약 53억 크로나 감소하여 총 지원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배분

표 12 스웨덴 정책금리 인하 경로

(단위: %)

구분	2025년					2026년
	2월	5월	6월	9월	11월	2월
기준금리	2.25	2.25	2.00	1.75	1.75	1.75
변동폭(%p)	-0.25	0.00	-0.25	-0.25	0.00	0.00

출처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oförändrad på 1,75 procent," 2026. 1. 29.,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6/styrrant-an-oforandrad-pa-175-procent/>, 검색일자: 2026. 2. 19.

44) 스웨덴 재무부, "Extra ändringsbudget för 2026 - Stöd till Ukraina och vaccinerberedskap," 2026. 2. 19.,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6/02/prop.-202526143>, 검색일자: 2026. 2. 24.

45) 스웨덴 국방부, "Luftförsvaret i fokus för nytt stort stöd paket till Ukraina," 2026. 2. 19.,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6/02/luftfor-svar-i-fokus-for-nytt-stort-stod-paket-till-ukraina/>, 검색일자: 2026. 2. 24.

- 이번 추경은 우크라이나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예산법」 제9장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⁴⁶⁾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제출하고 심의 기간 단축을 제안하였는데,⁴⁷⁾ 2026년 9월 총선을 앞두고 스웨덴 총방위 강화, 재정 건전성,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 및 정치적 이미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됨
-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정책금리 1.75% 동결 발표(2026. 1. 29.)⁴⁸⁾
 - (경제상황)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경제는 예상보다 다소 강세를 보임
 - (정책금리)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강화하고 목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1.75%로 동결시키기로 결정
 - (향후계획) 현재까지 스웨덴 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높은 관세에 견디는 견고함을 보여주었지만, 추가적인 불확실성과 주변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스웨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여 정책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
- ◆ 스웨덴 보건사회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발표(2026. 2. 12.)^{49) 50)}
 - 스웨덴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⁵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
 - 이를 위해 2026년 1월 1일 「전자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감시에 관한 법률(1994:451)」을 폐지하였으며, 향후 2026년 7월 1일에 「사회보장법」(socialförsäkringsbalken)의 제11장 제12조를 삭제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
 - 사회보험청은 이러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연간 행정 비용이 90만코로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
-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기후변화 재정 통계 발표 (2026. 2. 17.)⁵²⁾
 - (추이) 스웨덴 통계청은 2024년 스웨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지원 규모가 2023년에 비해 50억코로나 이상 감소하였다고 발표
 - (분야별 지원 규모) 스웨덴 정부는 기후변화 재정 지원은 ① 천연자원 관련 보조금 ② 배출 감축 보조금 ③ 에너지 관련 보조금 ④ 환경 지원 및 국제 협력 분야에 투자

46) 스웨덴은 예산법제상 매 회계연도에 통상 최대 두 차례까지 추가예산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예산법 제9장 제6조 제1항), 안보 위기와 같이 ‘특별한 사유(예산법 제9장 제6조 제2항)’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7) 통상적으로 추경예산 심사 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수정 혹은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의원 발의안인 모션(motionstiden) 제출 마감은 10~15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회에 우크라이나 상황의 긴급성을 이유로, 심의 기간을 6일로 단축하자고 제의

48)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oförändrad på 1,75 procent,” 2026. 1. 29.,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6/styrrantan-oforandrad-pa-175-procent/>, 검색일자: 2026. 2. 19.

49) 스웨덴 보건사회부, “Ett slopat krav på anmälan före ansökan om föräldrapenning,” 2026. 2. 12.,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6/02/prop.-202526117>, 검색일자: 2026. 2. 23.

50) 스웨덴 보건사회부, “Regeringen slopar kravet på anmälan före ansökan om föräldrapenning,” 2026. 2. 12.,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6/02/regeringen-slopar-kravet-pa-anmalan-fore-ansokan-om-foraldrapenning/>, 검색일자: 2026. 2. 23.

51) 스웨덴의 육아휴직 급여는 사회보험청에서 관리하며 스웨덴 부모 2명이 총합 아이 1명당 480일 동안 받을 수 있고 소득의 약 80% 수준(390일)과 정액급여(90일)로 구성

52) 스웨덴 통계청, “Minskat stöd till klimatomställning,” 2026. 2. 17., <https://www.scb.se/hitta-statistik/artiklar/2026/miljomotiverade-subventioner/>, 검색일자: 2026. 2. 2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12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l.357

월간

재정포럼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6년 3월 20일 발행 | 제357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2 | 월간 | ISSN 1226-2269 03